

# 국가회계 재정통계

ISSN 2635-7119

**News Letter**  
2021년 1분기 Vol. 26



**국가회계 동향**  
2020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재정통계동향**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결과

**공익법인회계 동향**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식 사례

# CONTENTS

## News Letter 2021년 1분기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재정통계

#### 국가회계 동향

- 04 2020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 06 제30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IPSASB ED74, 차입원가
- 09 OECD 합동회의: 고위예산관리 작업반과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 14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대차대조표 분석보고서 소개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4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7 2021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 재정통계 동향

- 34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결과
- 41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44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 50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현황과 결산

#### 공익법인회계 동향

- 54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석 사례

#### 센터 동향

- 76 2021년 제1회 ‘공공회계 포럼’ 개최
- 80 2021년 제1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81 해외공동연구: 「녹색공공조달 온실가스 감축효과」 최종보고
- 83 「의료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
- 85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 기준의 조화방안」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
- 87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개선방안 연구」 위탁연구과제 발간 예정
- 88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 진행

#### 세미나

- 90 VBA 2020 Korea,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통합
- 101 비재무보고 동향과 대응 방안 심포지엄

#### 공지사항

- 109 뉴스레터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 vol. 26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1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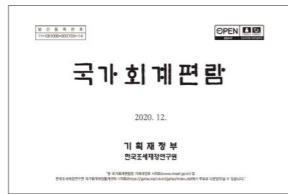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제작처** 고려씨엔피

## 국가회계 동향

- 2020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 제30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IPSASB ED74, 차입원가
- OECD 합동회의: 고위예산관리 작업반과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대차대조표 분석보고서 소개

# 01

## 2020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19회계연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였다.

『국가회계편람』은 국가회계 관련 법령 및 국가회계예규, 관련 실무해설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 처음 발간된 이래 국가회계기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2020년 『국가회계편람』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산 및 부채의 장·단기 구분 문구 일괄 정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상 장·단기 구분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단기는 '1년 이하' 또는 '1년 이내', 장기는 '1년 초과' 또는 '1년 후' 등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다.

### 나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주식 양식 변경을 위한 준용 규정 마련

퇴직수당충당부채에 대하여 연금충당부채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도록 문단을 신설하고, 퇴직수당충당부채 주식 양식도 연금충당부채와 동일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실무해설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수당충당부채전입액, 퇴직수당충당부채환입액 계정과목을 삭제하고, 퇴직수당비용, 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익의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 다 보험수리적손익의 계정과목 신설

보험수리적손익을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타순자산의증감(Ⅲ) 하위에 보험수리적손익(Ⅳ)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 라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실무해설 개정

투자일임계약을 특정투자일임계약과 비특정투자일임계약으로 구분하고 특정투자일임계약의 판단 기준 규정을 추가하였다.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직접 보유로 회계처리하고, 비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지분증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

2020년 『국가회계편람』은 2021년 1월 배포되었으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 2020년 「국가회계편람」의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자산 및 부채의 장·단기 구분 문구 일괄 정비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문단10)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5, 21, 적용사례2, 10, 13, 2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문단3, 적용사례10)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적용사례6, 7)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주식 양식 변경을 위한 준용 규정 마련	연금 회계처리지침(문단34, 40의2, 실무해설8)
보험수리적손익의 계정과목 신설	연금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5)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실무해설 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실무해설10)

# 02 제30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IPSASB ED 74, 차입원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월 26일 제30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로서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8명 및 해외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위원 현황(2021년 1월 기준)

- 정부위원(1): 권기대(감사원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 민간위원(8): 김동수(삼일회계법인 이사), 김봉환(서울대 교수), 김진욱(건국대 교수), 박세환(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아영(강원대 교수), 지현미(계명대 교수), 최연식(경희대 교수), 허웅(이정회계법인 이사)
- 해외위원(3): Ian Ball(공공부문화계사협회 국제부문 회장), Andreas Bergmann(취리히대 교수), Delphine Moretti(OECD 공공예산정책국 선임정책분석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30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ED 74, 차입원가<sup>1)</sup>에 대해 센터가 작성한 의견서(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Exposure Draft 74, IPSAS 5, Borrowing Costs – Non-Authoritative Guidance(2020. 10.)  
 2) Consultation Paper, Measurement(2019. 4.)

ED 74, 차입원가는 IPSAS 5, 차입원가에 비권위적 지침을 추가하기 위한 공개초안이다. IPSAS 5, 차입원가는 공공부문실체의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입원가의 경우 적격자산의 원가로 자본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IPSAS 5의 차입원가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PSASB는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집중식 차입이 일반적이므로 차입원가를 특정 프로젝트에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4월 자문보고서, 측정<sup>2)</sup>을 통해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화하고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자문보고서에 대한 응답분석 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IPSASB는 현행 IPSAS 5의 문단 규정을 유지하되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용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ED 74, 차입원가를 개발하였다.

ED 74, 차입원가를 통해 IPSAS 5에 추가될 비권위적 지침은 결론도출근거와 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로 구성된다. 결론도출근거는 IPSASB가 차입원가의 자본화 선택지를 유지하게 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무적용지침과 적용사례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공한다.

구분	주요 내용
결론도출근거 (BC3~BC14)	<b>IPSASB 의결사항의 배경 및 과정을 다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자산의 취득·건설·제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 옵션을 유지한 이유(BC3~BC9)</li> <li>• 실무적용지침과 적용사례를 추가하는 이유(BC10)</li> <li>• 차입원가와 거래원가가 구별된다고 본 이유(BC11~BC14)</li> </ul>
실무적용지침 (A.1~A.6)	<b>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 범위와 방법을 설명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 차입원가 자본화 기간</li> <li>• A.2: 자본화 한도</li> <li>• A.3: 이전(transfers)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자산인 경우</li> <li>• A.4: 중앙집중식 차입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조달한 자산인 경우(이자율)</li> <li>• A.5: 일반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자산인 경우</li> <li>• A.6: 일반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자산인 경우(채무증권의 범위)</li> </ul>
적용사례 (IE1~IE15)	<b>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 범위와 방법을 설명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E1~IE3: 일정 기간 동안 건설되는 적격자산</li> <li>• IE4~IE8: 중앙집중식 차입 프로그램 -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li> <li>• IE9~IE12: 일반차입금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li> <li>• IE13~IE15: 특정차입금 - 적격자산 금액의 일부를 위한 차입</li> </ul>



ED 74, 차입원가는 단일의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을 통해 상기 비권위적 지침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다음은 센터가 ED 74, 차입원가에 대해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IPSASB에 제출한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제출된 의견서의 원본과 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서는 IPSASB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virtual-meeting-0>).

의견요청사항(SMC)	KIPF 의견
제안된 추가 실무적용지침과 적용사례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수정사항을 제시하겠는가?	<p><b>[센터의견] 원칙적으로 동의함</b></p> <p>: 다만, 재무제표 작성자가 실무적용지침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 적용사례의 추가 또는 보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차입원가의 자본화 기간과 관련된 상세 사례를 IE1~IE3에 추가(예: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한 경우)</li> <li>② 명확한 자본화 기간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건설개시 시점과 채권발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도록 IE1~IE3 수정</li> <li>③ 실체가 중앙대출기관(centralized lending agency)과 동일한 경제 실체에 속하는 경우와 관련된 상세 사례를 추가(예: 연결재무제표에서 중앙대출기관의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에 자본화해야 할 상황 및 자본화 차입원가의 산정 과정 등)</li> </ul>
	<p><b>[부대의견]</b></p> <p>: ED 74의 결론도출근거 및 IPSAS 5의 일부 문단과 관련된 다음 사안의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IPSASB가 차입원가와 거래원가를 서로 다른 경제적 현상으로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BC11~BC14 보완</li> <li>② 차입원가 회계처리의 비합리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차입원가의 자본화(비용화) 선택 근거 및 기준을 공시하도록 IPSAS 5 문단 40 개정</li> <li>③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판매 가능하게 된 후의 잔존 특정차입금을 일반차입금으로 간주하도록 IPSAS 5의 문단 25 개정 (IAS 23의 문단 14 개정 취지 참고)</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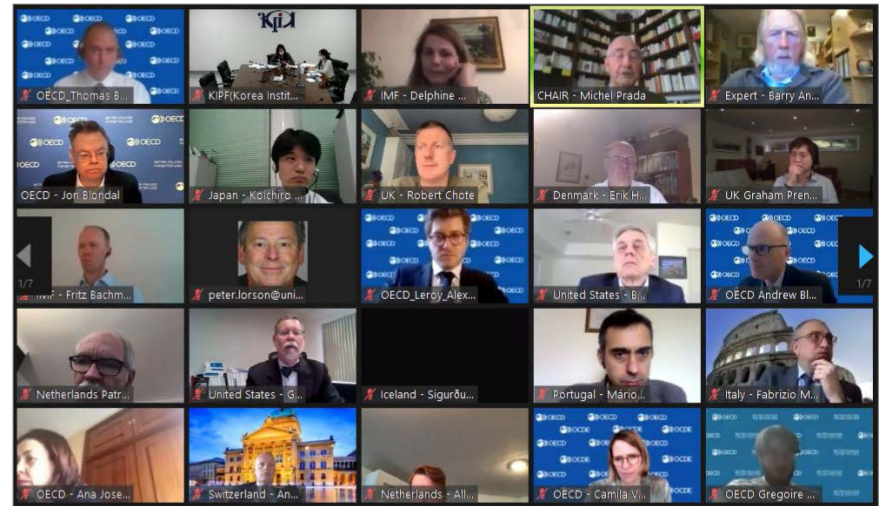
## 03 OECD 합동회의: 고위예산관리 작업반과 발생주의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지난 2월 25일 OECD는 고위예산관리 작업반(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SBO) 회의와 발생주의 재정관리 재무보고(Senior Budget Official Network on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회의<sup>1)</sup>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제1차 합동회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션1] 대출, 보증, 출자: 대차대조표 및 예산을 주제로 발표와 논평, [세션2] 고위예산관리 작업반의 위원회 승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2차 합동회의는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공익위원회(PIC),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유로스타트(EUROSTAT)의 활동 및 이슈 보고, 디지털 시대 정부의 재무보고, 지출 트렌드를 주제로 3월 30일 개최되었다.

본 뉴스레터는 제1차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합동회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oecd.org/gov/budgeting/workingpartyofseniorbudgetofficialssbo.htm>



1) 고위예산관리 작업반(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SBO) 회의는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며, 발생주의 재정관리 재무보고(Senior Budget Official Network on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회의는 올해로 2회를 맞이한다.

가 [세션 1] 대출, 보증, 출자: 대차대조표 및 예산<sup>2)</sup>

대출, 대출보증 및 출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다수의 정부에서 채택한 재정 패키지의 특징 중 하나이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재정 패키지의 역할과 투명성 및 위험분석 측면의 현황, 향후 정부 대차대조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 1** 대차대조표 기반 코로나19 지원정책: How to improve transparency and risk analysis?<sup>3)</sup>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각국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기존의 재정지출을 기반으로 한 지원 외에도, 정부의 긴급 재정 패키지는 종종 대출, 대출보증, 출자와 같은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와 수입 축소(foregone revenue)를 통한 경기 부양은 재정적자와 부채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된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의 재정적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보증의 경우 즉각적인 현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으며, 대출의 경우 즉각적인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정책은 우발부채뿐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2) 관련 참고자료: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in Times of Crisis)」 by OECD(「국가회계재정통계」 News Letter 2020년 4분기 수록)  
3) 발표자: OECD 사무국

과 부채에 해당하는 정부에 대한 의무(보증)와 권리(대출)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은 지출을 줄이면서도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재정 위험을 발생시킨다.

정부의 대출보증은 신용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부채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 대출은 채무자에 대한 우대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유동성 공급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정부 출자는 높은 레버리지와 파산 위험에 직면한 대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민간부문의 위험방지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보증 및 대출), 주가 및 향후 지원(출자)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으로 인한 재정비용의 상환 지연 관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의 특징으로 인해 향후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OECD 사무국이 9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위험 분석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은 재정 관리 및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원가정보와 예산 투명성은 제한되어 있으며,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의 전체 비용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지 않으며, 공시되는 정보도 포괄적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표 2** 대출 및 보증 예산 책정: [미국] 「연방 신용개혁법」<sup>4)</sup>

본 발표에서는 「연방 신용개혁법(US Federal Credit Reform Act)」에 대한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예산책정 방식과 회계처리 방법, 이를 통해 얻은 교훈과 과제가 소개되었다.

1960년도를 시작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기업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부 대출과 대출보증을 제공했다. 그러나 1980년도부터 예산적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정부대출로 인해 예산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신용개혁에 착수하였다.

4) 발표: Barry Anderson(전 미국 의회예산처 부국장), Kim Burke(전 미국 관리예산실 연방 신용정책 실장)

- 1) 원가를 정확히 측정한다.
- 2) 신용 및 기타 지출의 원가를 균등히 책정한다.
- 3) 수혜자의 필요를 최선으로 충족하는 형태의 효익의 제공을 장려한다.
- 4) 자원의 배분을 개선한다.

신용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새로운 신용비용 측정법이 도입되었다. 보조금 비용(subsidy cost)은 신용연장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여기에는 직접대출 및 대출보증 등이 포함된다. 신용비용은 대출기간 동안 정부에 유입되거나 정부로부터 유출되는 추정 현금 흐름(관리비 제외)을 연방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할인한 순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대출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보증이 확약된 시점에 해당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한다.

발표자들이 언급한 기존 현금주의 예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존 현금주의 문제점	개선사항 예시
1 직접 대출비용의 과대계상	기타 지출과 동등한 예산을 비용으로 책정
2 대출 보증비용의 과소계상	지출 상쇄로 집계되는 첫째 수수료 징수액에 의한 편의 제거
3 인위적인 적자 감축	적자 감소로 집계되는 대출자산 매각에 의한 편의 제거
4 원가정보 집계의 유인 부족	정확한 원가 측정을 위해 각 부처에 비용 및 위험 정보 집계 유인 제공
5 프로그램 및 예산 결정의 편향성	신용, 증여 및 기타 프로그램에 걸친 대안 간의 비교 개선

끝으로, 미국의 신용개혁은 정부대출 및 보증에 대한 위험분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두드러진 성과로는 투명성 제고, 위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나타났다.

**논평**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 투명성의 필요성<sup>5)</sup>

발표 1(대차대조표 기반 코로나19 지원정책 투명성 및 위험분석 제고 방안)에 대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차대조표를 기반으로 한 대응은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대응 방안이 대차대조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출, 대출보증 및 출자는 중요한 정책

5) 논평: Robert Chole(전 영국 예산책임청 청장, 킹스칼리지런던 객원교수)

도구지만 해당 도구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련 영향이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예·결산 회계와 재정전망에 투명하고 정교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책임을 촉진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장려하나,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는 위기상황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간단히 적용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OECD는 위기상황에서의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영국 예산책임청은 은행의 구제금융 및 코로나 관련 기업 지원에 투명성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발표 2(대출 및 보증 예산 책정: [미국] 「연방 신용개혁법」)에 대해서는 「연방 신용개혁법」을 통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장기 ‘보조금’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유의미한 개선사항이지만 관리비가 제외된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안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가 제안사항으로 정부가 ‘도망은 갈 수 있지만 숨길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대차대조표 기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용처리 및 공시와 관련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나 [세션 2] 고위예산관리 네트워크의 위원회 승격 관련 논의**

본 세션에서는 고위예산관리 네트워크를 작업반(working party)에서 위원회(committee)로 승격하는 사안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결과 본 회의에 참석한 모든 고위예산관리 네트워크 회원국 전원이 위원회 승격에 동의함에 따라 3월 30일 예정된 제2차 합동회의에서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를 초청하여 해당 제안의 의회 안전상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04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대차대조표 분석보고서 소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년도 연구과제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호주 총 7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연구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통한 자산과 부채관리 및 재정위험의 식별을 주제로 각국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 정도와 재정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본 뉴스레터는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인 영국의 사례를 시작으로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를 수록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현재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재정위험을 평가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 11월 재무부가 발간한 「대차대조표 분석보고서(Balance Sheet Review Report)」는 2017년부터 시작된 대차대조표 분석 프로젝트의 결과를 가. 대차대조표 분석(접근법) 개발, 나.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프레임워크, 다. 대차대조표 효율성 제고 방안(투명성, 자산관리, 위험관리), 라.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뉴스레터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수록하였으며,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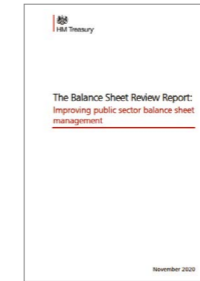
(대차대조표 분석 보고서)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37804/The\\_Balance\\_Sheet\\_Review\\_report\\_\\_\\_\\_.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37804/The_Balance_Sheet_Review_report____.pdf)

## 가 대차대조표 분석 개발

### 1) 개발 배경

영국은 정부 대차대조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대차대조표 분석(Balance Sheet Review, BSR) 프로젝트를 출범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체계적인 대차대조표 분석 접근법(BSR Approach)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020년 11월에 발간했다.



영국 정부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지출검토 보고서(Spending Review)를 통해 지출이 면밀히 조사되고 있지만, 본 대차대조표 분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대조표 분석 보고서는 통합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를 기반으로 한다. 공공부문의 대차대조표는 정해진 시점에 정부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영국 정부는 현금흐름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검증된 대차대조표(통합결산보고서)를 연간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은 대차대조표 정보 발간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 분석 과정에서 통합결산보고서상에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주요한 자산과 부채의 인식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미래 현금 지급금과 미래 조세수입을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현행 회계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3,775억파운드(약 590조원)의 우발부채가 대차대조표에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통합결산보고서와 예산책임청의 재정위험보고서는 부채와 차입금 외에 이자 및 환율변동과 같은 요인이 대차대조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차대조표의 규모 확대와 외부요인의 영향은 대차대조표 관리 강화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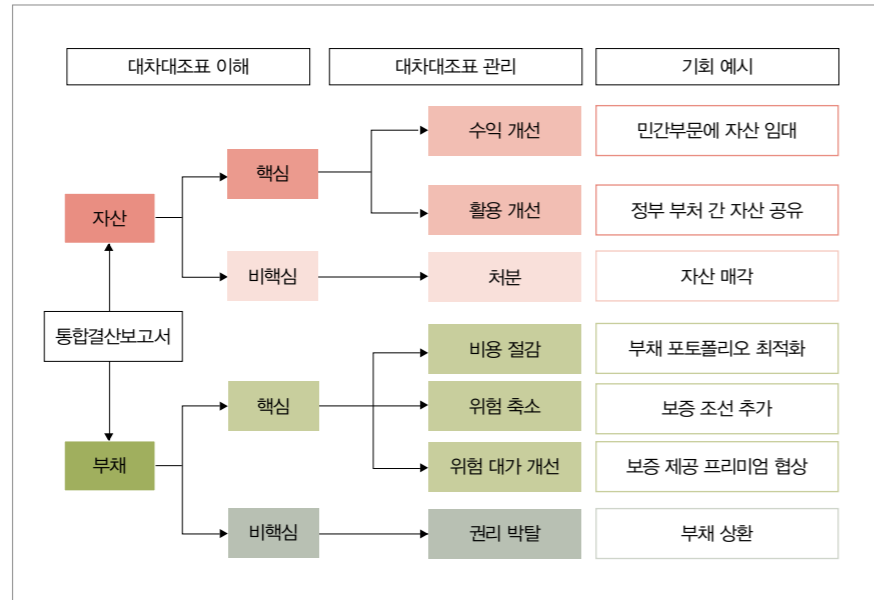
### 2) 대차대조표 관리의 이점

대차대조표 관리를 통한 이점으로 대차대조표 정보는 정부의 핵심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수익은 ①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재투자되거나 ② 세금을 낮추고 ③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자산 및 부채로 인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는 압박이 늘 존재하며, 관리를 통한 작은 개선사항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자산의 수익률이 1% 증가한 경우 연간 200억파운드(약 31조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합계를 초과한 금액이다. 또한 대차대조표 정보는 개별적으로는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상당할 수 있는 위험의 전체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위험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가능케 한다.

영국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대차대조표 분석 접근법을 개발하여 정부의 자산과 부채의 활용 개선을 획기적으로 도모했다.

체계적인 대차대조표 분석 접근법



나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프레임워크

정부는 대차대조표 관리원칙에 따라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재무부의 재정 및 공공지출 관련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공공부문 자산과 부채를 세 개의 포트폴리오로 분류(정책/재무/상업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각 포트폴리오별 장기관리목적, 감독, 처분에 대한 개요 수립
- 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유사한 자산/부채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기회를 포착하여 위험과 수익 관리 개선

첫 번째 단계로,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미래기금(Future Fund) 자산 관리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개입에서 부실자산(legacy assets)과 부실부채(legacy liabilities)의 운용 관리와 목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프레임워크

	정책 포트폴리오	재무 포트폴리오	상업 포트폴리오
구성	고정자산, 특수자산 (예: 학교, 병원, 국방)	금융자산 (예: 지분, 외환보유액, 연금)	공기업
관리 목적	정부 정책목적 지원 (예: 공공서비스 제공, value for money 달성)	미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장치 구축, 계약상의 의무로 부채 조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 납세자의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 증대
감독	각 부처의 장기 정책 목적을 수립하고 자산의 매입과 매각 시기 결정	각 부처의 장기 부채 조달을 결정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	각 부처의 권한으로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자산 관리
처분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점에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의 가치(value for money) 달성	펀드매니저의 분석에 따라 다음의 경우 자산 매각 (유동성 제고 목적, 부채 현실화)	각 부처의 권한 내에서 펀드매니저에 의해 자산 매각

다 대차대조표 효율성 제고 방안: 투명성, 자산관리, 위험관리

대차대조표 분석(Balance Sheet Review, BSR)을 통해 정부의 자산과 부채의 관리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개혁의 기회가 식별되었다. 여기에는 개별 부처의 대차대조표상 특정 자산과 부채의 수익을 개선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며 그간의 성과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투명성: 국가 정책이 공공부문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정부정책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관리를 통한 이익을 확보하는 데 대차대조표 정보의 적용범위, 품질, 빈도 및 적시성 개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책 결정이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계로서 재무부는 통계청 및 예산책임청과 협력하여 광범위한 대차대조표 지표의 측정 및 예측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다.



- 2019년부터 통계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통계적 측정치를 도출하기 시작함(GFSM 2014)
- 2018년에 예산책임청은 정부 대차대조표에 대한 첫 세부예측을 내놓고 공공부문 순자산(Public Sector Net Worth, PSNW)의 첫 번째 전망치를 개발하고자 노력 중이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재정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임

## 2) 자산관리: 자산의 가치(value for money) 제고

### ① PFI(Public Financing Initiative) 및 PF2(Public Finance 2) 폐기

PFI는 영국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모델로 현재 학교, 도로, 교도소,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인프라, 주택, 군사 시설 등 대략 700개의 PFI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다. 통합결산보고서는 390억파운드(약 60조원)의 PFI 부채를 보고했으며, PFI 계약으로 인해 정부는 연간 100억파운드(약 15조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대차대조표 분석(Balance Sheet Review, BSR)을 통해 PFI와 관련된 높은 비용과 증가된 재정적 위험이 인식되었으며, PFI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유연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2018회계연도 예산서(Budget 2018)는 PFI의 후속인 PF2가 더 이상 새로운 정부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② 공공부문의 지식자산(Knowledge Assets, KAs) 가치 극대화

지식 재산, 연구개발, 기술, 데이터, 노하우 및 기타 무형자산을 포괄하는 지식자산 투자는 현대 경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차대조표 분석(BSR)

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지식의 규모와 다양성을 인식했다. 2018년 11월 '공공부문 지적재산권 및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스마트화(getting smart about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intangibles in the public sector)'를 발간하고 공공부문 전반에서 지식자산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인 공공부문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기금과 이러한 기회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새로운 정부 부서 설립을 제안했으며, 해당 부서는 2021년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1,500억파운드(약 234조원)의 지식자산에서 수익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장벽을 식별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유사한 자산으로부터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③ 디지털 국가 자산 등록부(Digital National Asset Register, DNAR):

#### 정부 자산 관리 개선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중앙에서 정부 재산을 등록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보유자산의 가치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재무부는 국무조정실 내의 정부 재산국(Office of Government Properties)과 협력하여 디지털 국가 자산 등록부(DNAR)와 정부 재산 탐색기(Government Property Finder)를 포함하는 디지털 및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리 관련 디지털 국가 자산 등록부(DNAR)를 개발함으로써 보유 중인 토지 및 부동산의 활용을 개선하고 잉여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국가 자산 등록부(DNAR)는 영국 정부의 4,430억파운드(약 692조원)에 달하는 토지 및 재산의 관리 개선과 상업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2021년 5월부터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해당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위험관리: 장기위험과 부채비용 관리 강화

① 지방정부의 상업용 부동산 매입 통제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사회에 수십억파운드 상당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사업대출위원회(Public Works Loan Board, PWLB)를 통해 저비용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이 활동을 지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수의 의회에서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사업대출위원회(PWLB)를 이용하여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정부에서 2016~17년과 2018~19년 사이에 66억파운드(약 10조원)의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차대조표 분석(BRS)은 이러한 자산의 증가로 인해 정부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공공사업대출위원회(PWLB)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지역정부의 핵심 활동에 대한 공공사업대출위원회(PWLB) 자금의 가용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소득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2020년 5월 재무부는 지방정부의 투자부동산 매입 제한에 관한 협의를 발표했으며 관련 협정이 실행될 경우 재정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협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예산책임청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상업투자자에 대한 지출감소 전망에 더해 2020~26년 사이에는 475백만파운드(약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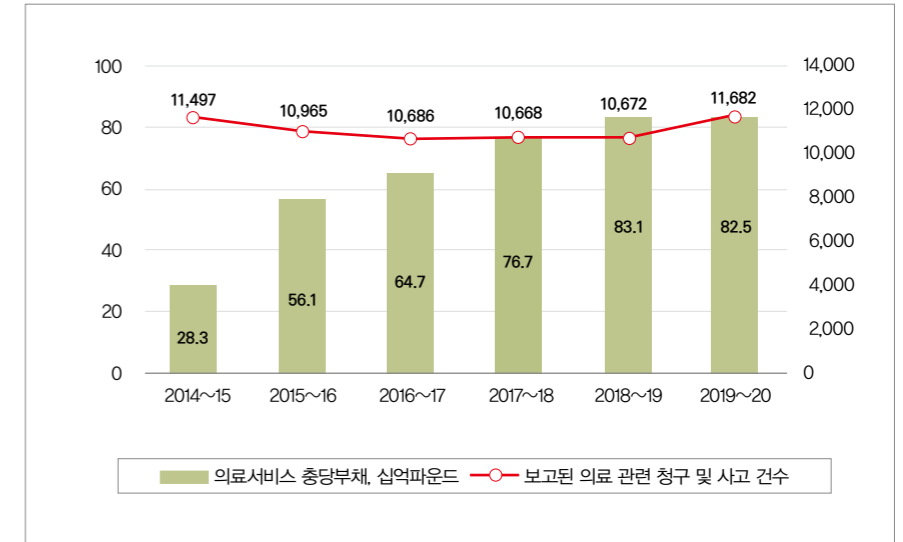
② 의료과실로 인한 재정위험 관리

정부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총당부채(통합결산보고서 2019년 3월 31일 기준 853억파운드, 약 133조원)는 의료 과실로 인해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care Service, NHS)에 부과된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미래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위해 책정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배상청구 건수는 2배, 지급액은 4배 증가했으며, 향후 보상금과 소송비 지급 가능성에 대한 총당금은 550% 증가했다.

대차대조표 분석(BSR)은 증가하는 의료과실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료과실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부인과 관련 청구가 의료과실 청구금액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애초에 산부인과의 안전 개선과 과실 방지를 위한 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늘어나는 의료과실 비용과 재정적 위험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국민

을 위해서도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된다. 더불어 유아 뇌 손상 방지를 목표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발표되었다.

국가보건서비스 보상제도(NHS Resolution) 의료과실 청구에 대한 총당금 증액 및 연간 신고된 신규 청구 건수



출처: NHS Resolution

라 향후 계획

본 보고서의 발간으로 대차대조표 분석(BSR) 프로젝트는 종료되나, 영국 정부는 대차대조표 관리 및 측정의 개발을 포함하여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론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대차대조표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평가 진행
- 대차대조표 분석(BRS)의 결론을 정부 재정 프레임워크 검토에 일부 고려(재정 프레임워크는 비교적 광범위하지만, 대차대조표 관리와 측정을 포함한 특정 분야에 대해 다룰 예정)
- 광범위한 대차대조표 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측하여 재정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청과 예산책임청의 추가 작업 지원
- 정부의 지출결정, 프로세스 및 지침에 대한 대차대조표 관리의 추가적인 적용 고려
-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기금 설립 및 정부 전반에 걸쳐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회를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설립

- 우발부채 중앙관리(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를 구축하여 정부의 리스크 관리 강화
- 납세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대차대조표 분석(BSR)을 통해 식별된 특정 기회에 적용
- 증가하는 의료과실 비용 및 관련 재정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출산안전 조치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이러한 출산안전 조치는 소아 뇌 손상 방지를 목표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출 검토 2020(Spending Review 2020)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음. 관련 보고서는 2021년에 발간될 예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차역 및 인접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통해 10년 동안 수만개의 집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70억파운드(약 10조원) 상당의 공공 가치의 증가를 목표로 함
- 대차대조표 분석(BRS)의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정부의 코로나19 개입에 따른 위험관리 및 전염병 발생 시 취득한 부실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적절히 관리
- 기후변화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및 위험 노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21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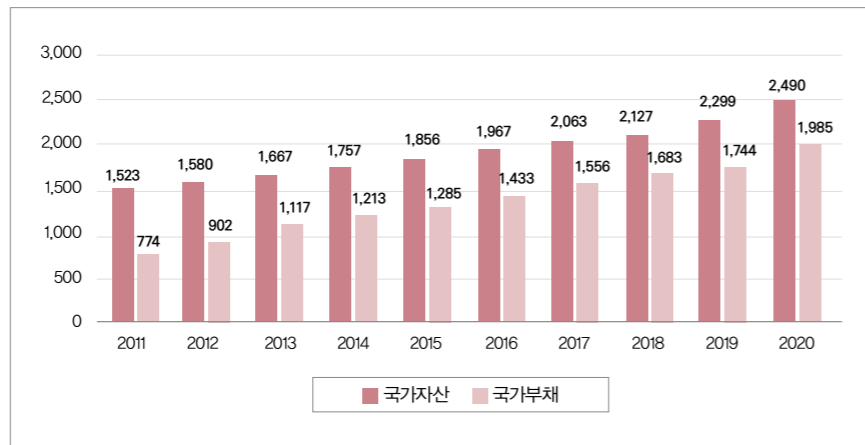
##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21년 4월 6일 발표하였다. 국가결산 결과 2020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0.8조원 증가한 2,490.2조원, 부채는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1.6조원 증가한 1,985.3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04.9조원이다.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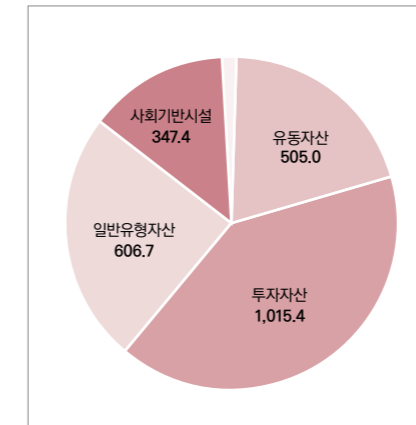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2011~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가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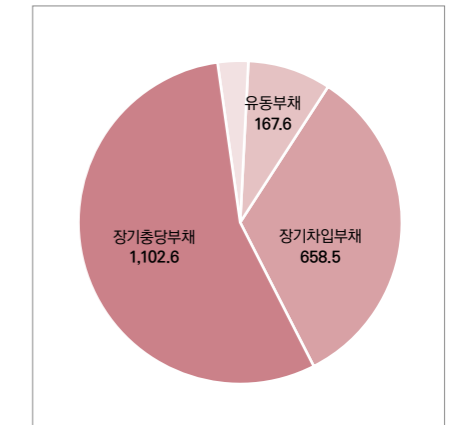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490.2조원으로 전년 대비 190.8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 101.4조원, 유동자산 46.1조원, 일반유형자산 29.1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0.8%와 24.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20.3%의 유동자산 순이다.

2020년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292.1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9.0조원, 단기금융상품 69.0조원 등 총 505.0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707.0조원, 장기대여금 164.8조원 등 총 1,015.4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75.4조원, 건물 69.8조원 등 총 606.7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95.1조원, 철도 40.9조원 등 총 347.4조원이며,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7조원 등 총 1.8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6.8조원 등 총 13.9조원이다.

2020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985.3조원으로 전년 대비 241.6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 111.6조원, 장기충당부채 102.3조원, 유동부채 14.1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5%, 장기차입부채는 33.2%, 유동부채는 8.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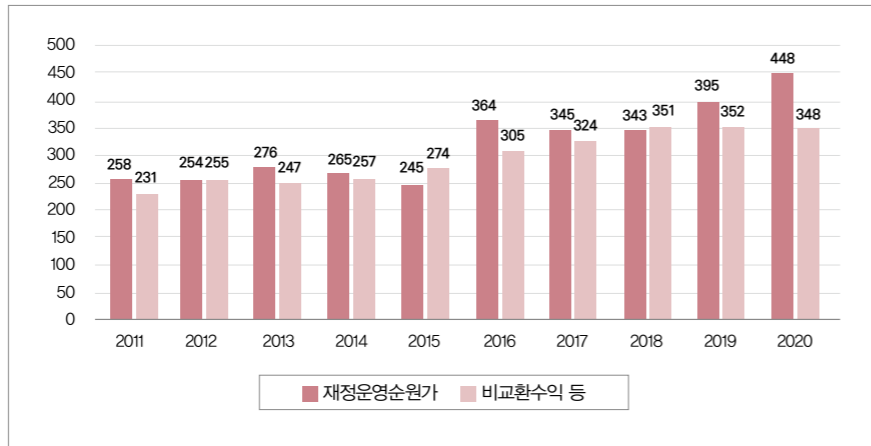
2020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83.6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0.1조원 등 총 167.6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642.8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2.6조원 등 총 658.5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102.6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044.7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49.0조원, 기타 8.9조원(보증충당부채 5.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 56.6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9.5조원, 장기미지급금 17.1조원이다.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48.4조원이며 전년 대비 53.2조원 증가하였다.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347.7조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00.7조원이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2011~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02 2021년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국가회계교육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 국가회계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 업무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전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집합교육인 국가회계 전문교육, 국가회계의 활용,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사이버 강좌 제공 등 수강생 중심의 교육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무원의 회계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2021년 국가회계교육' 사업에서 추진하는 6대 실행 과제와 2021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에 대해 소개한다.

### 가 교육 목표

국가회계교육은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가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전문적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표인 '2021년도 국가회계교육 중점 실행 과제'와 같이 6가지 중점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교육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4가지 요인을 파악하고 전년도 교육생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도 국가회계교육 중점 실행 과제

비전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	
미션	국가회계 전문기관으로서 센터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공무원 회계 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 활용 가능성 제고	
2021년도 중점 실행과제	1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 과정별 사전이해도 평가 및 재무결산 업무매뉴얼 제공으로 자발적 학습 동기 부여
	2	서로 소통하는 교육 교육생과 상호작용 진행 및 질의응답 확대를 통한 교사 실재감(teacher presence) 강화
	3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교육 내용 개편(교육생 피드백 참조, 예시 현실화, 최근 동향 반영 등)으로 학습자 몰입 제고
	4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시,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강의 시스템으로 더 선명한 교육 영상 및 음성 송출
	5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 전염병 확산 예방에 중점을 둔 결산담당자 워크숍 운영
	6	발로 뛰며 찾아가는 교육 전염병 확산 시에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 서비스 제공

나 중점 추진 과제

1)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

교육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교육생의 자발적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교육 전에는 사전이해도 평가에 참여하여 본인이 신청한 교육의 대략적인 내용과 주요 학습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개발한 재무결산 업무매뉴얼을 제공하여 신규 업무 담당자들이 국가회계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기주도적인 교육 참여를 통하여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서로 소통하는 교육

전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공통적으로 아쉬워한 것은 질의응답이나 강사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올해 국가회계교육은 강사와 교육생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강의 중 교사 실재감을 높임으로써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3)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재를 개선하여 올해 교육생들에게는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교재의 여러 예시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여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각 교재에 첨부된 국가회계 관련 지표들을 최근 지표로 변경하여 최신 국가회계 동향을 반영할 것이다. 또한 2022년부터 적용되는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전 교재 업데이트를 진행함으로써 2022년도 국가회계교육부터는 변경되는 차세대 디브레인의 내용이 반영된 교재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

전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집합 교육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되면 방송 송출 및 음향 장비를 보강하여 교육생들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조금 더 쉽게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참여 안내문도 보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국가회계전문교육(온라인)

5)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모든 교육 과정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 진행되는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해당 시점의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도 예방하고 교육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서 운영할 것이다.

6) 발로 뛰며 찾아가는 교육

매년 진행해왔던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및 방문 교육이 어렵게 되어 2020년도에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올해는 해당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고, 코로나19 감소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다 2021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2021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6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된다. 본 교육은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도까지는 전국 8개 도시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재택형) 교육으로 전체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교육 신청 접수 전까지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방역지침을 예의 주시하여 기존처럼 집합교육으로 진행할지, 지난해처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과정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각 교육 회차 중 2일간 진행되며, 1일차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기초 원리와 이해, 재무제표 만들기 실습, 국가회계제도의 이해로 구성된다. 2일차에는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 국가회계의 기본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국가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국가회계의 업무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실습, 국가재무제표를 통한 국가재정상태의 이해 등 조금 더 실무적인 과정으로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수입·지출 과정과 국유·물품 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교육생이 담당업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중앙부처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중에 2회(회당 2일) 실시된다. 본 과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수정전 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와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설된 1일차 교육 과정으로 국가자산과 부채의 특성 및 이해, 프로그램 세입과 프로그램 원가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회계이론 과정을 선행학습한 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처에 직접 센터의 강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개설되지 않는 시점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국가회계이론기초, 국가회계실무 동영상 교육도 국가회계교육포털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을 참조하기 바란다.



2019년 국가회계전문교육(서울)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

차수	지역	교육과정	일정	기간	비고
1차	전국 (집합교육 운영 시) · 무관 (온라인교육 운영 시)	이론	6. 23.(수) ~ 6. 24.(목)	2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거하여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재택형) 교육 진행 예정
		실무	6. 25.(금)	1일	
2차		이론	6. 30.(수) ~ 7. 1.(목)	2일	
		실무	7. 2.(금)	1일	
3차		이론	7. 7.(수) ~ 7. 8.(목)	2일	
		실무(국유·물품)	7. 9.(금)	1일	
4차		이론	7. 21.(수) ~ 7. 22.(목)	2일	
		실무	7. 23.(금)	1일	
5차		이론	7. 28.(수) ~ 7. 29.(목)	2일	
		실무	7. 30.(금)	1일	
6차		이론	8. 11.(수) ~ 8. 12.(목)	2일	
		실무	8. 13.(금)	1일	
7차		이론	8. 25.(수) ~ 8. 26.(목)	2일	
	실무	8. 27.(금)	1일		
8차	이론	9. 1.(수) ~ 9. 2.(목)	2일		
	실무(국유·물품)	9. 3.(금)	1일		
9차	이론	9. 8.(수) ~ 9. 9.(목)	2일		
	실무	9. 10.(금)	1일		
10차	이론	9. 29.(수) ~ 9. 30.(목)	2일		
	실무	10. 1.(금)	1일		
11차	국가회계의 활용	10. 6.(수)	1일		
12차	재무결산실무	10. 21.(목) ~ 10. 22.(금)	2일		
13차	재무결산실무	10. 28.(목) ~ 10. 29.(금)	2일		

※ 본 교육은 내부 사정에 따라 장소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재정통계 동향

-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결과
-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현황과 결산

# 01

##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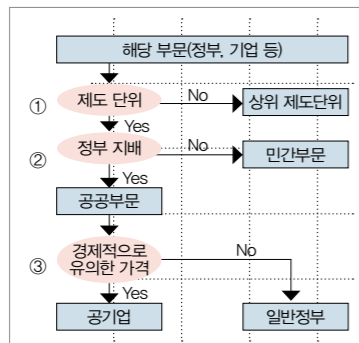


### 가 작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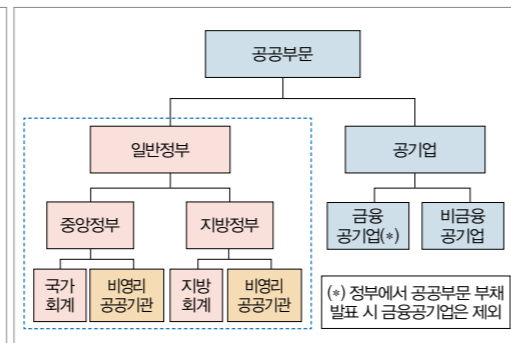
정부는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정한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GFSM 2001의 주요 특징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재정통계 작성범위로 하고, 발생주의 회계 및 시장가격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FS체계는 저량(stock)과 유량(flow)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거래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나 포괄범위

공공부문 decision tree



공공부문 포괄범위



GFSM 2001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일반정부 단위로 작성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SNA 2008, ESA 2010 등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decision tree'와 같이 제도단위와 시장성기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포괄범위를 산정한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 독립적 제도단위, 시장성기준, 특수기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 ① 제도단위: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② 시장성기준: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인 경우 일반정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공기업(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 ③ 특수기준: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정부판매 비율 80% 이상) 일반정부로 분류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금(55개 중앙관서 및 국고금 회계) 및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222개)을 포함하며, 재정통계 연차보고서의 작성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직영기업 254개, 공사 및 공단 95개)과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로 작성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일반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 주요 연차보고서

GFSM 2001에서는 총 13종의 연차보고서(Statement 2개, Table 9개, Annex 2개)가 작성되는데, 이 중 주요 보고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기준의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증감률
□ 총수입(A)	610.2	633.8	655.5	21.7	3.4
(GDP 대비, %)	(33.2)	(33.4)	(34.2)	(0.8)	-
• 조세	348.3	381.0	385.0	4.0	1.1
• 사회보험료	125.0	134.5	146.4	12.0	8.9
• 출연	0.0	0.0	0.0	△0.0	△56.3
• 기타수익	136.9	118.4	124.1	5.7	4.8
□ 총지출 <sup>1)</sup> [(1)+(2)]	562.8	574.9	639.1	64.2	11.2
(GDP 대비, %)	(30.7)	(30.3)	(33.3)	(3.0)	-
(1) 비용(B) <sup>1)</sup>	516.9	537.8	590.6	52.8	9.8
(GDP 대비, %)	(28.2)	(28.3)	(30.8)	(2.4)	-
• 피용자 보수	105.3	112.7	120.0	7.2	6.4
• 재화와 용역의 사용	110.7	107.6	117.3	9.7	9.0
• 고정자산소비	29.8	31.7	33.2	1.5	4.6
• 이자	20.7	20.4	21.1	0.6	3.1
• 보조	77.0	86.7	103.1	16.5	19.0
• 출연	0.1	0.6	0.7	0.1	12.0
• 사회급여	119.0	138.7	155.7	17.0	12.2
• 기타비용	54.2	39.4	39.6	0.2	0.5
(2) 비금융자산순취득(C) <sup>1)</sup>	45.9	37.1	48.6	11.4	30.7
(GDP 대비, %)	(2.5)	(2.0)	(2.5)	(0.6)	-
□ 순운영수지(A-B)	93.3	96.0	64.9	△31.1	△32.4
(GDP 대비, %)	(5.1)	(5.1)	(3.4)	(△1.7)	-
□ 순융자·차입(A-B-C)	47.5	58.9	16.3	△42.5	△72.2
(GDP 대비, %)	(2.6)	(3.1)	(0.9)	(△2.2)	-

주: 1)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임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정부운영표는 당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총수입', '비용', '비금융자산순취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정부운영표상 '총수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수익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이익, 환산이익, 처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반면에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손실, 환산손실, 처분손실, 손상차손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한편 '비금융자산순취득'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순투자(취득-처분)에서 고정자산소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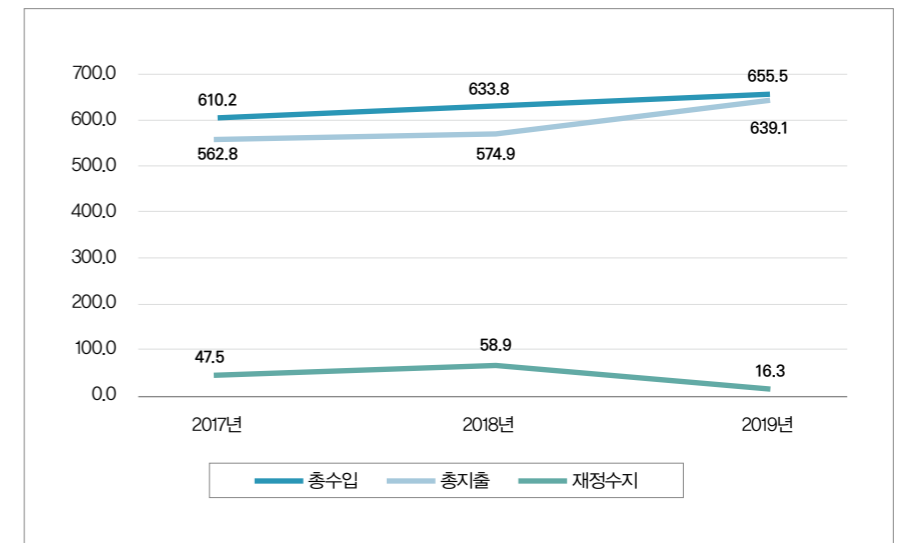
2019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결과, 총수입은 655.5조원(GDP 대비 34.2%)이며, 각 정부별 수입은 중앙정부 542.9조원(GDP 대비 28.3%), 지방정부 311.6조원(GDP 대비 16.2%), 내부거래 △199.0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639.1조원(비용 590.6조원+비금융자산순취득 48.6조원)으로, 각 정부별 지출은 중앙정부 542.1조원(GDP 대비 28.3%), 지방정부 296.0조원(GDP 대비 13.6%), 내부거래 △199.0조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순융자·차입)는 16.3조원(GDP 대비 0.9%) 흑자로, 각 정부별 재정수지는 중앙정부 0.7조원(GDP 대비 0.0%), 지방정부 15.6조원(GDP 대비 0.8%)으로 모두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정부 3개년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단위: 조원)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2)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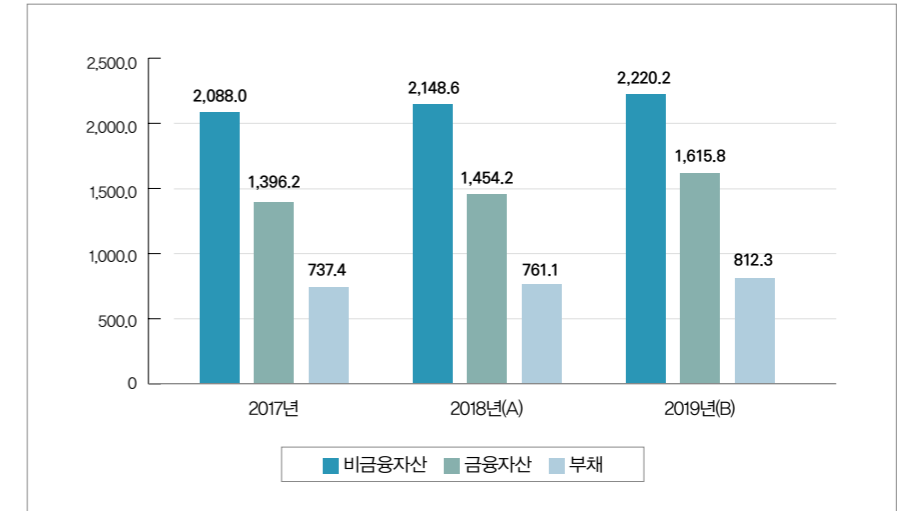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p)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증감률
□ 자산	3,484.2	3,602.9	3,836.0	233.1	6.5
(GDP 대비, %)	(189.8)	(189.8)	(199.9)	(10.1)	-
○ 비금융자산	2,088.0	2,148.6	2,220.2	71.5	3.3
(GDP 대비, %)	(113.7)	(113.2)	(115.7)	(2.5)	-
고정자산	1,171.5	1,209.5	1,235.6	26.1	2.2
재고자산	16.3	14.5	14.4	△0.1	△0.9
비생산자산	900.2	924.6	970.2	45.6	4.9
○ 금융자산	1,396.2	1,454.2	1,615.8	161.6	11.1
(GDP 대비, %)	(76.1)	(76.6)	(84.2)	(7.6)	-
현금및예금	231.6	263.9	254.6	△9.3	△3.5
채무증권	151.6	163.1	164.7	1.7	1.0
융자	175.7	184.6	196.6	12.0	6.5
주식및기타지분	647.3	643.9	773.5	129.6	20.1
파생금융상품	0.4	0.6	0.3	△0.3	△48.6
기타미수계정	189.6	198.1	226.1	28.0	14.1
□ 부채	737.4	761.1	812.3	51.2	6.7
(GDP 대비, %)	(40.2)	(40.1)	(42.3)	(2.2)	-
채무증권	570.3	590.0	639.7	49.8	8.4
융자	103.5	103.3	101.5	△1.8	△1.8
주식및기타지분	0.4	1.0	1.0	0.0	3.9
보험책임준비금	-	-	1.8	1.8	100.0
파생금융상품	1.8	0.4	0.6	0.1	26.9
기타미지급계정	61.4	66.5	67.7	1.2	1.9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일반정부 3개년 자산 및 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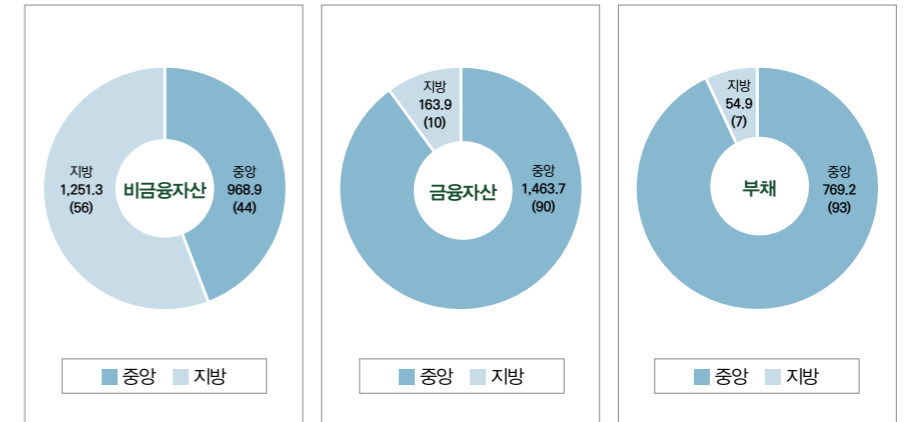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일반정부의 자산 및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9년 부채는 전기 대비 51.2조원(6.7%)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경우 각각 161.6조원(11.1%) 및 71.5조원(3.3%) 증가하였다.

부문별 자산 및 부채

(단위: 조원, %)



주: ( ) 안은 비중을 나타냄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활용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 라 일반정부 재정통계 공시

정부는 매년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해서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재정통계 자료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data.imf.org/?sk=89418059-d5c0-4330-8c41-dbc2d8f90f46&slid=1435762628665>, 검색일자: 2021. 3. 15.



# 02

##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기획재정부는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발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월별·연도별 재정통계·추이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통합재정수지

2019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12.0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0.6\%$ )로, 통합재정수입은 443.9조원(GDP 대비 23.1%), 통합재정지출은 455.8조원(GDP 대비 23.8%)을 기록하였다.

각 부문별 수지는 일반회계 17.9조원, 기타특별회계  $\Delta 27.0$ 조원, 기업특별회계  $\Delta 1.2$ 조원, 기금 9.1조원, 세입세출 외  $\Delta 10.8$ 조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총괄

(단위: 십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b>합계 (GDP 대비, %)</b>	<b>443,853 (23.1)</b>	<b>455,850 (23.8)</b>	<b>△11,997 (△0.6)</b>
일반회계	295,547	277,655	17,892
기타특별회계	15,301	42,325	△27,024
기업특별회계	2,590	3,756	△1,166
기금	130,042	120,956	9,086
세입세출 외	374	11,159	△10,785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 2)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입은 전년(438.3조원) 대비 1.3% 증가한 443.9조원(GDP 대비 23.1%)을 기록하였다. 국세 수입은 관세 감소(0.9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0.1조원 감소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4.7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1.0조원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수입원별 수입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국세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수입	자본수입	계
2019년(A)	293,454	69,550	78,143	2,705	443,853
2018년(B)	293,570	64,854	77,134	2,703	438,262
증감(A-B)	△116	4,697	1,009	2	5,591
(증감률)	(△0.0)	(7.2)	(1.3)	(0.1)	(1.3)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 3)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은 전년(407.1조원) 대비 12.0% 증가한 455.8조원(GDP 대비 23.8%)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자본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1.2조원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자본지출을 중심으로 3.3조원 증가하였다.

기금은 경상·자본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8.5조원 증가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경상지출 증가 등으로 1.1조원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회계·기금별 지출 비교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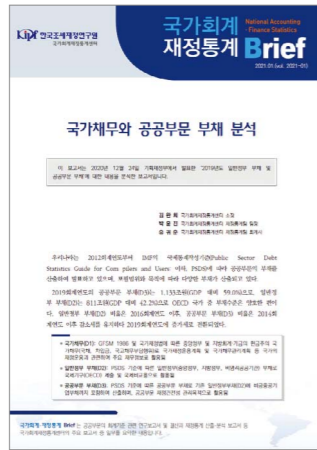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기금	기업 특별회계	계
2019년(A)	277,655	42,325	11,159	120,956	3,756	455,850
2018년(B)	246,425	39,057	6,602	112,407	2,607	407,099
증감(A-B)	31,230	3,268	4,557	8,548	1,149	48,751
(증감률)	(12.7)	(8.4)	(69.0)	(7.6)	(44.1)	(12.0)

출처: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 03

##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회계연도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2021-01)를 발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보고서 및 보도자료는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Brief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기존 내용에 추가 분석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가 부채의 종류

2019년의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총부채<sup>1)</sup>)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형	2019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관리기준
국가채무 (D1)	723조원 (37.7%)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 (D2)	811조원 (42.2%)	D1+비영리공공기관 (예보, 농어촌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133조원 (59.0%)	D2+비금융공기업 (LH, 한전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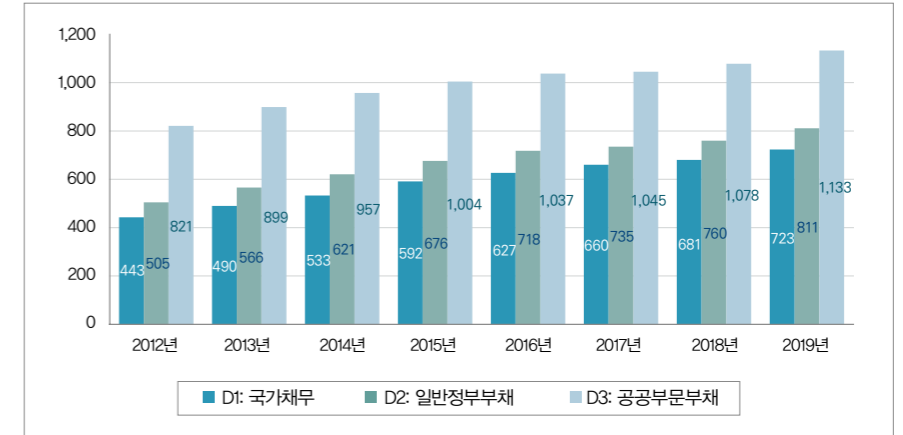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부채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8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2년 505조원에서 2019년 811조원으로 증

<sup>1)</sup>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가(연평균 44조원, 7.0%↑)하였고, D3는 821조원에서 1,133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45조원, 4.7%↑). 특히 D2의 경우 2019년에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재정 위험관리가 요구

부채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8개년 추세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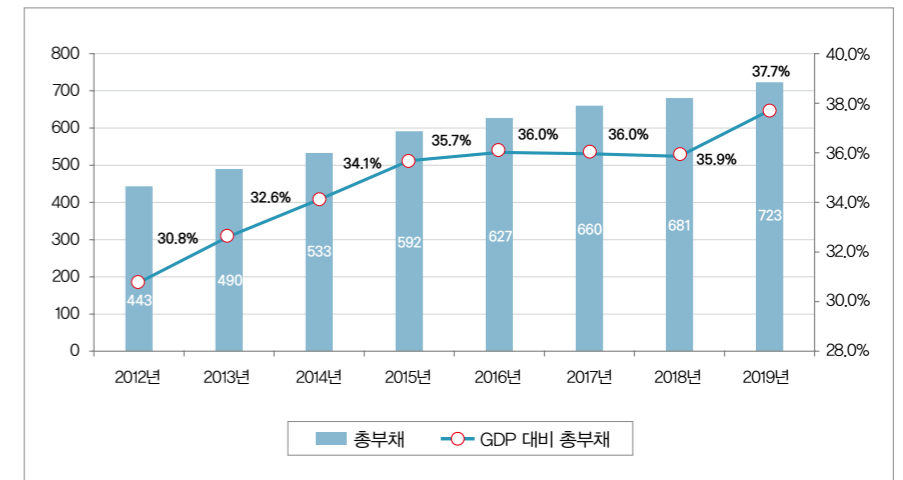
출처: D1: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D2·D3: 기획재정부,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 나 D1 분석

2019년의 D1은 723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6.3%)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34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12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45조원)에 주로 기인함. GDP 대비 비율은 37.7%로, 2018년 대비 증가함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단위: 조원, GDP 대비 %)



출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다 D2 분석

1) 증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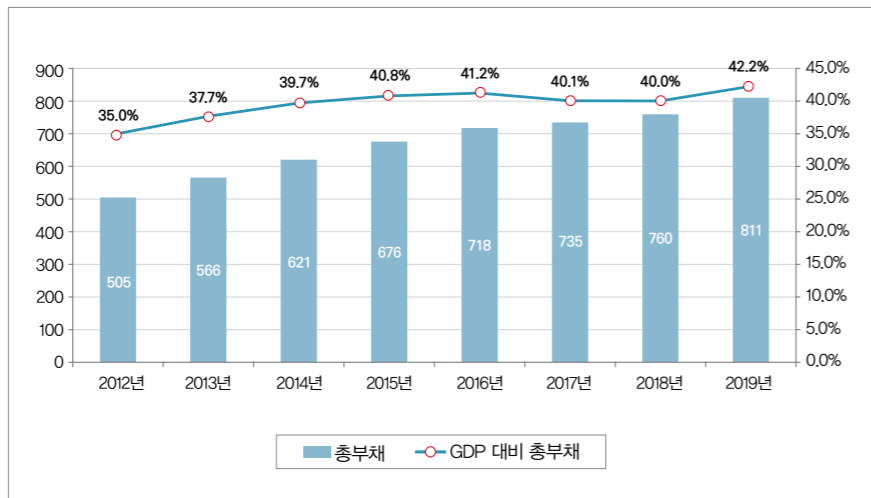
2019년의 D2는 811조원으로, 전년 대비 51조원(6.7%)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율은 42.2%로 2016년 이후 감소 양상을 보이다 2019년에 다시 증가로 전환됨

중앙정부 부채(768조원)는 전년(711조원) 대비 56조원 증가함. 일반회계 적자 보전·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48조원), 공채 감소(△1조원) 등 채무증권이 50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차입금이 4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 부채(55조원)는 전년(60조원) 대비 5조원 감소함.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증가(2조원)하였으나,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감소로 인해 부채가 크게 감소(△7조원)하였음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전년(49조원) 대비 1조원 증가(50조원)하였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으로 인한 부채 감소(△1.5조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제부금적립금 등 부채 증가(2조원)에 기인함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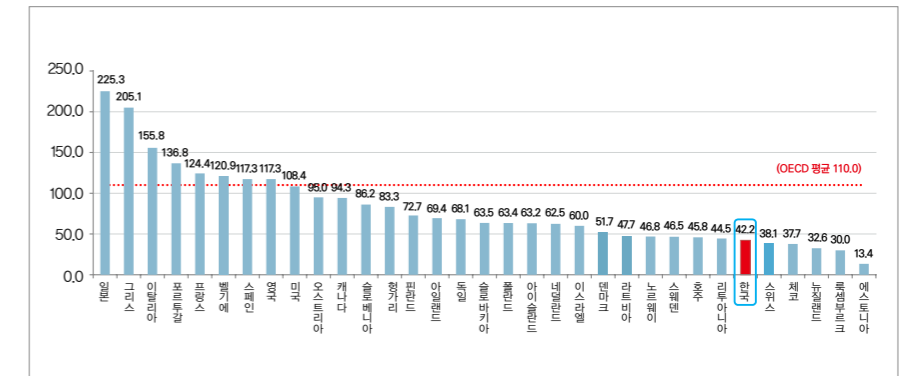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2) 국제동향

D2는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채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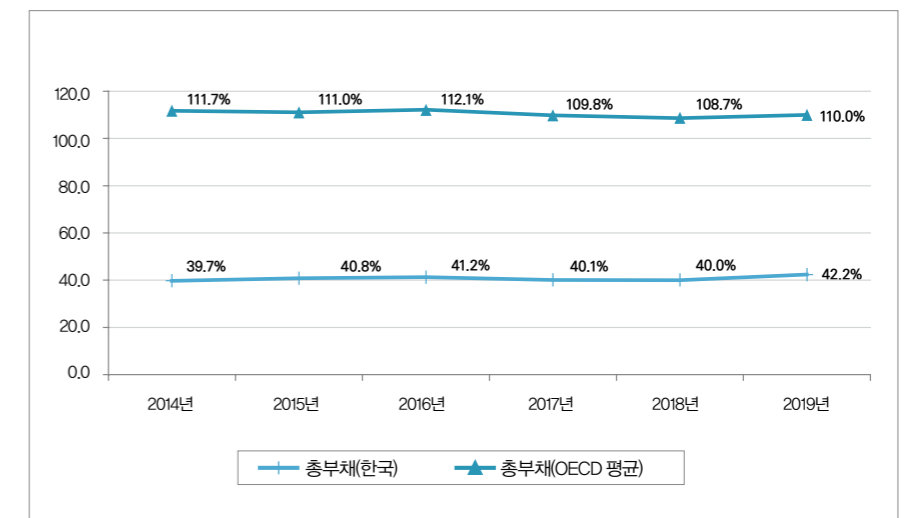
일반정부 총부채(D2)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라트비아는 GDP 대비 수치가 1% 미만으로 그래프에서 제외  
출처: OECD, Stat Economic Outlook No 108(2020. 12.),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부채(D2) 기준

GDP 대비 총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는 2014년 39.7%에서 2019년 42.2%로 2.5%p 증가하였고, OECD평균은 2014년 111.7%에서 2019년 110.0%로 1.7%p 감소함

일반정부 GDP 대비 총부채(D2)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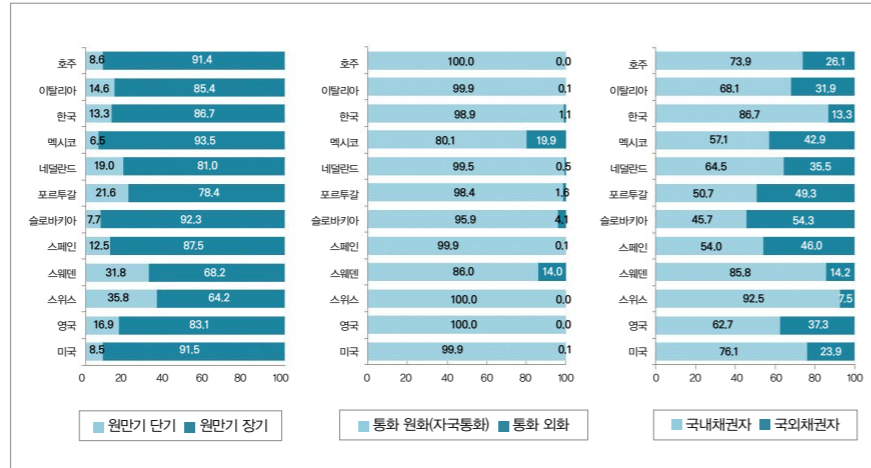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 Economic Outlook No 108(2020. 12.),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편, 부채 유형에 대한 추가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D2를 만기별, 통화별, 채권자 거주지별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반정부부문 부채별(D2) 비교

(단위: %)



출처: OECD, 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만기)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93.5%임.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 도래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통화별) 대부분 원화(자국통화)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19.9%의 비중을 보임. 외화 부채가 많으면 환위험이 높아지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 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며,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2.5%이고,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54.3%임. 국외채권자 보유 부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IMF, OECD 등 국가별 재정분석보고서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

## 라 D3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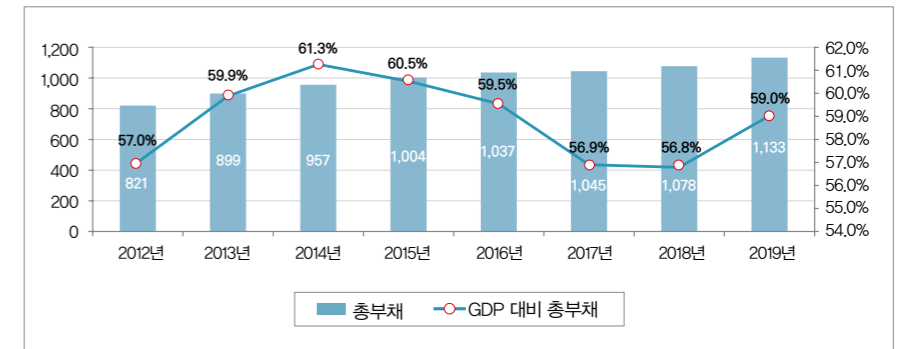
### 1) 증감분석

2019년의 D3는 1,133조원으로 전년 대비 55조원(5.1%) 증가함. D3에서는 비금융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주요 비금융기업의 부채 증감액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5.1조원 증가, 도로공사 1.1조원 증가, LH 2.6조원 감소 등으로 구성됨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다 2019년에 증가함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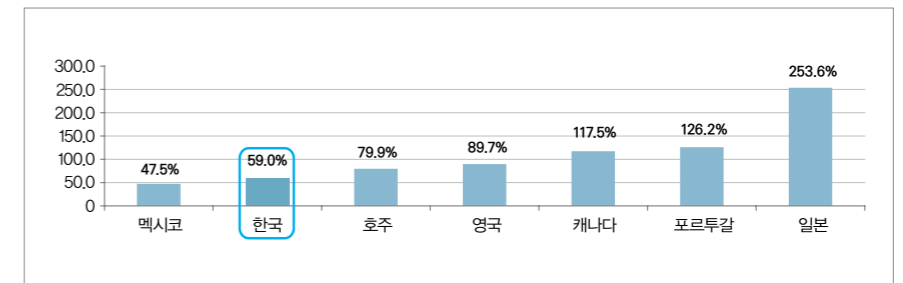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 2) 국제동향

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7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D3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 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 04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현황과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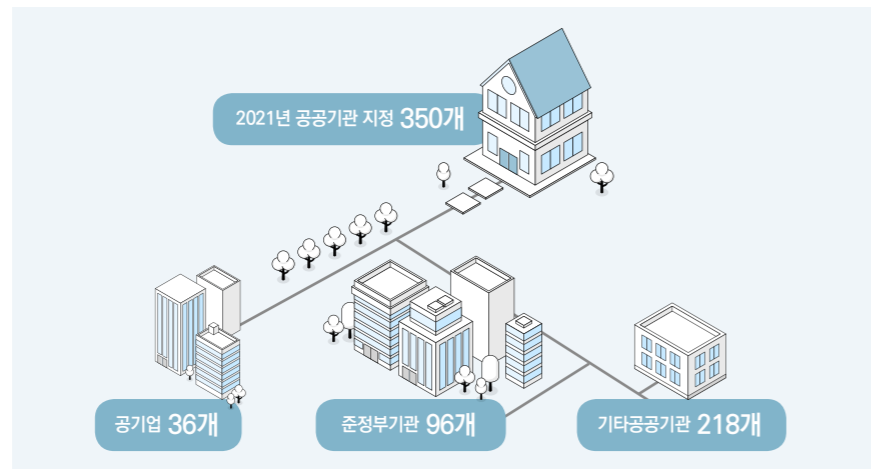
## 가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현황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 시장형	16	16	-			-
■ 준시장형	20	20	-			-
② 준정부기관	95	96	+1			+1
■ 기금관리형	13	13	-			-
■ 위탁집행형	82	83	+1			+1
③ 기타공공기관	209	218	+9	+12	△2	△1
계	340	350	+10	+12	△2	-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12)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기타공공기관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부	국립항공박물관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고용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과기부	한국재료연구원	
	과기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산업부	한전엠씨에스(주)	
해제(△2)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정 해제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유형변경(1)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사원총회 등의 승인 의결로 확정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K-IFRS에 따라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 따라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3월 말까지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중 사원총회 의결기업 포함)은 확정된 결산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승인·확정하여 5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감사원 결산 검사결과(7월 31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8월 20일)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요약

결산서 제출	결산서 승인	감사원 제출	감사원 → 기획재정부 송부	국회 제출
2월 말	3월 말	5월 10일	7월 31일	8월 20일



#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식 사례

# 01

##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식 사례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서류 중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가 '재무제표'로 변경되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함께 주식사항도 의무공시 대상서류에 포함되었다. 공익법인의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기부자 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기부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익법인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주식사항 공시는 2020회계연도의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시점(2021년 4월 공시)부터 적용되는데, 기존에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해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함께 주식도 작성해본 경험이 있지만 외부회계감사 경험이 없는 다수의 공익법인은 주식을 처음 작성하게 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2018년에 배포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주식의 해설과 사례가 첨부되어 있으나, 필수적 주식 기재사항 전부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공익법인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필수적 주식기재사항 전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선택적 주식기재사항의 사례는 추후 제시할 예정이다.

### 가 필수적 주식기재사항

주식이란 재무제표 본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

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41조에서 15개의 필수적 주식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개별 조항에서도 주식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주식을 작성함에 있어 참고할 사례이나 사례별 양식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고정된 서식은 아니다. 각 공익법인의 상황에 따라 주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 사업내용

공익법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주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부자 등 정보이용자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공익법인의 주요 사업이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내역을 알 수 있도록 주식에 기재한다.

#### 사례 1

A공익법인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의거 20x1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사업, 아동지원센터, 아동장학사업, 임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지원센터, 아동장학사업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사업, 아동지원센터, 아동장학사업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공익목적사업부문에 해당하며, 임대사업은 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여유공간을 임대하여 수행하며, 이는 기타사업부문에 해당합니다.

####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

공익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회계정책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기재한다.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은 계정별로 기재하는데, 공익법인별로 주요 계정의 유무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다.

☞ 사례 2

아래 사례는 예시이며 공익법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당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회계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부와 기타사업부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사업, 아동지원센터, 아동장학사업은 공익목적사업부으로 구분하며 임대사업은 기타사업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통합부문 작성 시 공익목적사업부와 기타사업부 간의 내부거래는 모두 제거한 후 산출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익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공익법인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시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출자, 증여 등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내용연수 증가나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4) 무형자산

공익법인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과목	추정내용연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5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5) 순자산

공익법인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 시 주무부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해당 기본재산의 취득원가를 기본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보통순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을 순자산조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급여충당부채

공익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납입한 적립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 수익인식

공익법인의 수익은 기부금,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는 경우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과 진행률 및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비용**

공익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따라 실제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공익법인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유동성에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주석을 통해 해당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 원칙적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사용제한기간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거나 당좌개설보증금으로 설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이 임의로 사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이 제한된 자산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의사항]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작성범위**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아니더라도 사용의 제한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에도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여 주석을 작성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으로 주석명칭을 변경해서 작성이 가능하다.

**사례 3**

A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종류	금융기관명	금액(원)	비고
보통예금	XX은행	1,000,000	기본재산
	YY은행	5,000,000	

종류	금융기관명	금액(원)	비고
보통예금	ZZ은행	2,000,000	지급보증 담보제공
정기예금	XX은행	3,000,000	
	ZZ은행	2,000,000	차입금 담보
ELS	OO증권	5,000,000	기본재산
yy주식	(주) yy	3,000,000	

**[주석작성방법]**

A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①, ③, ⑤, ⑥은 기본재산, 담보 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주석으로 기술해야 한다.

**[주석예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정과목	종류	금융기관명	금액		사용 제한 내용
			당기말	전기말	
단기투자자산	보통예금	XX은행			기본재산
	보통예금	ZZ은행			지급보증 담보제공
	ELS	OO증권			기본재산
	소계				
장기투자자산	정기예금	ZZ은행			차입금 담보
	소계				
합 계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공익법인의 부채 중 차입금과 같이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는 그 금액과 상환시기가 중요한 정보이다.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러한 부채의 내용은 공익법인의 유동성을 파악하기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례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계정과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상환예정금액		
			3개월 이내	3개월 ~ 1년	1년 초과
미지급금	20,000,000	20,000,000	20,000,000	-	-
차입금	50,000,000	50,000,000	5,000,000	15,000,000	30,000,000

(전기말) (단위: 원)

계정과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상환예정금액		
			3개월 이내	3개월 ~ 1년	1년 초과
미지급금	15,000,000	15,000,000	15,000,000	-	-
차입금	30,000,000	30,000,000	5,000,000	5,000,000	20,000,000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금액	
				당기말	전기말
일반대출	DD은행	20x2. 3. 20.	2.51	5,000,000	-
일반대출	EE은행	20x1. 9. 10.	2.76	-	7,000,000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차입처	만기일	이자율	금액	
				당기말	전기말
일반자금대출	DD은행	20x4. 3. 20	2.45	45,000,000	23,000,000
소계				45,000,000	23,000,000
차감: 유동성장기차입금				(15,000,000)	(3,000,000)
차감 계				30,000,000	20,000,000

5) 현물기부의 내용

공익법인이 기부받는 자산은 현금 이외에도 다양한 물품이 있을 수 있다. 현물로 기부받는 경우에는 현물을 직접 공익사업에 활용하거나 현금화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에는 현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기부금수익을 인식하고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해당 주석은 계정 과목별로 기부받은 현물자산을 합산하여 작성하고 상대계정을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였는지, 기본순자산으로 인식하였는지 구분한 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대표 기부자를 추가정보로 기재하며 특정 개인기부자 실명의 경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대표 기부자 실명은 생략할 수 있다. 기부받은 현물자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처분 제한, 특정 목적 사용 등) 해당 정보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사례 5

당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내역	금액	기부금 수익	기본순자산	기부자
토지	200,000,000	-	200,000,000	(주)AA
건물	100,000,000	-	100,000,000	(주)AA
주식	150,000,000	20,000,000	130,000,000	
차량운반구	30,000,000	30,000,000	-	(주)XX자동차

(주)AA로부터 기부받은 토지와 건물은 아동지원센터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차입금 등 부채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공익법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해당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지급보증 등 보증을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이 명시적으로 공익법인의 부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공익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사례 6

당기말 현재 재단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관련 채무의 내용	
				계정	금액
토지	300,000,000	44,000,000	DD	차입금	40,000,000
건물	200,000,000	55,000,000	BB	임대보증금	50,000,000

당기말 현재 B사업과 관련하여 CC회사에 대해 xx금액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공시하여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보여줄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예	
• 재화의 매입이나 매출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 기부금(현금, 현물) 지급	

상기 거래의 예 이외에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주석에 기재할 수 있으며, 아래 사례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에 해당 유형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에는 공익법인의 주요 경영진(이사장, 이사, 임원 등)도 포함되므로 주요 경영진에 지급된 급여, 퇴직급여 등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지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사례 7

(1) 공익법인과 관계된 주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인 구분	특수관계인명
출연법인	EE법인
이사의 과반수 차지	FF법인
기타	GG법인, HH법인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특수관계인명	수익	비용	재화매입	유·무형자산 취득(처분)
EE법인	-	5,000,000	-	-

(전기)

(단위: 원)

특수관계인명	수익	비용	재화매입	유·무형자산 취득(처분)
EE법인	-	10,000,000	-	100,000,000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인 구분	특수관계인명	채권		채무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출연법인	EE법인	-	-	20,000,000	-

(4) 당기 및 전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200,000,000	300,000,000
퇴직급여	40,000,000	30,000,000
합 계	240,000,000	330,000,000

(5)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인 구분	특수관계인명	담보제공자산	담보설정금액
기타	GG법인	토지 및 건물	200,000,000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거래내역

해당 주석은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대상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대상 회계연도의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을 작성한다.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되는 거래뿐 아니라 유형자산의 취득·처분 및 재화의 매입 등 공익법인의 주요 거래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여유자금운용 목적 등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의 거래는 제외할 수 있다.

**[주의사항]** 총자산 또는 사업수입금액의 10% 이상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공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에 기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이 주석에서 제외한다.

사례 8

B공익법인의 2x18년 재무제표상 총자산 규모는 50억원이고, 사업수익금액은 10억원이다. 다음은 B공익법인의 거래내역 일부이다.

날짜	거래처명	적요	금액(원)
2x18. 2. 15.	(주) AA	공연장 대관료	20,000,000
2x18. 2. 15.	(주) AA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2,000,000
2x18. 3. 20.	(주) BB	공연장 대관료	10,000,000
2x18. 3. 20.	(주) BB	부대설비대여료	3,000,000
2x18. 3. 20.	(주) BB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1,000,000
2x18. 4. 6.	CC재단	배분사업비	(50,000,000)
2x18. 5. 31.	(주) AA	공연장 대관료	25,000,000
2x18. 5. 31.	(주) AA	부대설비대여료	10,000,000
2x18. 5. 31.	(주) AA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3,000,000
2x18. 7. 8.	(주) DD	연습실대관료	1,000,000
2x18. 7. 14.	(주) DD	공연장대관료	2,000,000
2x18. 9. 22.	CC재단	배분사업비	(60,000,000)

날짜	거래처명	적요	금액(원)
2x18. 2. 15.	(주) AA	공연장 대관료	20,000,000
2x18. 2. 15.	(주) AA	입장권판매대행수수료	2,000,000
2x18. 3. 20.	(주) BB	공연장 대관료	10,000,000

**[주석작성방법]**

1) 거래처별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처명	금액
(주) AA	103,000,000
(주) BB	14,000,000
CC재단	(110,000,000)
(주) DD	3,000,000

2) 중요 거래처의 판단

총거래금액이 ① 또는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처는 공시대상이 된다. 중요성 판단의 기준은 당기 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이다.

- ① 총자산 규모의 10% = 50억원 x 10% = 5억원
- ② 사업수익 금액의 10% = 10억원 x 10% = 1억원

위의 사례에서 (주) AA와 CC재단은 거래금액 총합이 사업수익금액의 10%(1억원)를 초과하므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주석예시]**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주)AA	매출액	103,000,000	대관료수익 등
CC재단	사업수행비용	110,000,000	배분사업비

(전기)

(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주)AA	매출액	92,000,000	대관료수익 등
XXX	기부금수익	100,000,000	기부자 현물기부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내역

공익법인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나 소송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공익법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송사건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해당 주석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 ①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경우: 소송사건으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
- ② 주석에만 공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실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상황

사례 9

[주석예시]

당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원고인 사건					
AA지방법원	XX재단	과세관청	부과처분 취소	100,000,000	1심 진행 중
⋮					
피고인 사건					
BB지방법원	(주)CC	XX재단	손해배상	80,000,000	1심 진행 중
⋮					

당기말 현재 상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총당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없습니다. 상기 소송사건 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10

[주석예시]

당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원고인 사건					
AA지방법원	XX재단	과세관청	부과처분 취소	100,000,000	1심 진행 중
⋮					
피고인 사건					
BB지방법원	(주)CC	XX재단	손해배상	80,000,000	1심 진행 중
DD지방법원	(주)ZZ	XX재단	손해배상	50,000,000 <sup>1)</sup>	1심 패소 2심 진행 중
⋮					

1)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하여 해당 소송가액 50백만원을 소송총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이 기존에 적용해 오던 회계처리방법이 변경되거나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오류가 발생하여 당기에 수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이 변경되면 소급 적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데 변경 내용과 이유,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 사례 11

[주석예시]

재단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입선출법이 총평균법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당 재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1) 상기 변경으로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2) 상기 변경으로 운영성과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당기		전기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전	수정 후

②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회계처리의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 그 정당성 및 그 변경이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사례 12

[주석예시]

당 재단은 건물의 사용 및 잔여사용가능 기간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건물은 취득일로부터 XX년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평가 결과 취득일로부터 XX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종전의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XX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③ 전기오류수정

전기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며, 특히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오류의 내용, 수정금액,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사례 13

[주석예시]

재단은 전전기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모두 비용 처리한 오류 사실을 당기에 발견하였습니다. 비교표시된 전년도 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상태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전기말			전기초		
	수정 전	변경금액	수정 후	수정 전	변경금액	수정 후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보통순자산-잉여금						

(2) 운영성과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전기	
	수정 전	수정 후
감가상각비		

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기본순자산은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의 기초가 된다. 즉 공익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자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특정 자산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인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주석에서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공익법인의 기본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

기본순자산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재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회계상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석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별도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은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한 자산은 취득원가 부분만 작성하면 된다.

사례 14

A공익법인의 2x18년 회계연도 말 현재 기본순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취득원가	기말평가금액
정기예금	10,000,000	10,000,000
주식A	30,000,000	35,000,000
토지	200,000,000	평가하지 않음
건물	100,000,000	평가하지 않음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당기말 현재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은 취득 이후 재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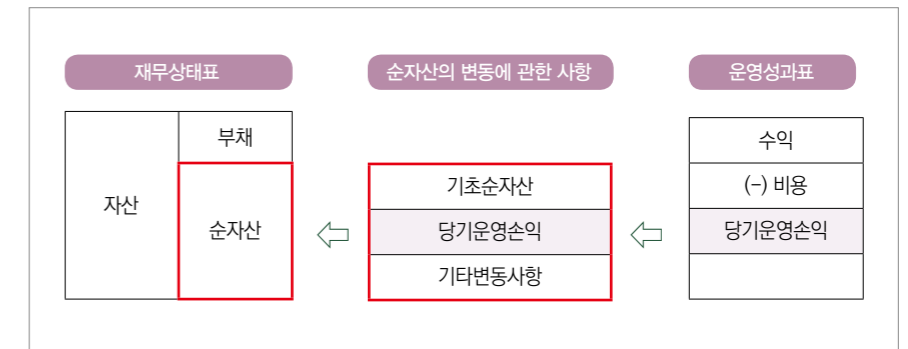
구분	취득원가	공정가치
정기예금	10,000,000	10,000,000
주식A	30,000,000	35,000,000
토지	200,000,000	평가하지 않음
건물	100,000,000	평가하지 않음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해당 주석은 회계연도 말 공익법인의 순자산 크기와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내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와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계



사례 15

[주석작성방법]

<주의사항>

해당 주석은 하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본 예시에서는 통합부문의 순자산 변동내역만 작성함

(1) 당기초: 전년도 재무제표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주석에 작성한 '당기말' 금액으로 작성한다.

(예시) A 공익법인의 2017년 '순자산변동에 관한 사항' 주석 내용

2017년 말 재무제표의 주석

과목	기본순자산	통합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				
당기말	1,000,000	200,000	200,000	100,000

(2) **기본순자산 증감**: 보통순자산에서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기본순자산 증가와 보통순자산 감소를 동시에 기재한다. 당기에 지급받은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기본순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본순자산의 증감에 인식한다.

(예시)

- a) 2018년 B법인으로부터 건물을 기부받았으며, 기본순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다. 기부받은 시점의 공정가치는 500,000원이다.
- b)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순자산 중 50,000원을 보통순자산으로 편입하였다(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

(3) **당기운영이익(손실)**: 보통순자산의 잉여금에 반영한다. 해당 금액은 운영성과표의 당기운영이익과 일치해야 한다.

(예시)

2x18년 운영성과표	
계정 과목	당기
사업수익	100,000
사업비용	60,000
⋮	
당기운영이익(손실)	30,000

(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순자산조정 항목에 반영한다.

(예시) 당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10,000원 발생하였다.

(5) **당기말**: 상기 거래의 합계 금액이다. 당기말 부분에 작성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기말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당기와 전기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통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당기초(1)	1,000,000	200,000	200,000	100,000
기본순자산증감(2)	500,000			
	(50,000)		50,000	
당기운영이익(3)			3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4)				10,000
당기말(5)	1,450,000	200,000	280,000	110,000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은 유형자산 재평가 수행으로 발생한 총누적손익을 말한다. 또한 자산별로 재평가액 추정방법을 함께 기재한다.

**사례 16**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자산 종류	재평가추정방법	재평가 전 장부금액 (A)*	재평가금액 (B)	평가증감 (B-A)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000,000	350,000,000	150,000,000
건물	감정평가	100,000,000	180,000,000	80,000,000
유형자산 합계		300,000,000	530,000,000	230,000,000

(\*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재평가한 시점의 평가 전 장부금액을 의미한다.)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비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정가치 금액과 장부금액은 동일하며, 만약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사유도 주석에 함께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운영성과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다만, 공익법인에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효과로 인해 재무상태표상의 금액과 평가손익 금액(사례 17의 B-A)이 다를 수 있다.

사례 17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2x18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증권

(단위: 원)

계정명	회사명	주식 수	취득원가(A)	공정가치	장부금액(B)	평가손익 (B-A)
단기매매증권	(주) AA <sup>1)</sup>	20주	1,500,000	1,200,000	1,200,000	(300,000)
매도가능증권	(주) BB <sup>1)</sup>	10주	1,500,000	1,750,000	1,750,000	250,000
	(주) CC <sup>2)</sup>	30주	5,000,000		5,000,000	-

1)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증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합리적인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채무증권

(단위: 원)

계정명	만기일	종목명	취득원가(A)	공정가치	장부금액(B)	평가손익 (B-A)
매도가능증권	2x19. 2. 25.	ELB	2,000,000	2,016,000	2,016,000	16,000



# 센터 동향

- 2021년 제1회 '공공회계 포럼' 개최
- 2021년 제1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해외공동연구: 「녹색공공조달 온실가스 감축효과」 최종보고
- 「의료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
-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개선방안 연구」 위탁연구과제 발간 예정
-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 진행

# 2021년 제1회 '공공회계 포럼'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공공회계 관련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회계통계센터 및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공공회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회계 포럼'의 외부 전문가로 전 홍익대 김경호 교수(위원장), 경북대 권선국 교수, 서울시립대 최원석 교수, 서울대 김봉환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센터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국가회계팀장 외 1명, 지방회계통계센터 양영철 부장, 박정규 부장 외 3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이은경 과장, 안옥진 분석관이 참관하였다.

### 2021년 제1회 '공공회계 포럼' 참석자 현황

- **자문위원(4)** 김경호 교수(전 홍익대), 권선국 교수(경북대),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김봉환 교수(서울대)
- **지방회계통계센터(5)** 양영철 부장, 박정규 부장 외 3명
- **센터(3)**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팀장 외 1명
- **국회예산정책처(2)** 이은경 과장, 안옥진 분석관

2021년 제1회 '공공회계 포럼'은 2021년 1월 29일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국가회계 및 지자체 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차입원가 관련 IPSAS의견 제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공공회계 포럼' 운영 계획 및 MoU 체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가 국가회계 및 지자체 회계기준 개정사항 공유

### 국가회계기준 개정사항

개정연도	개정내용
2019	자산 및 부채의 장·단기 구분 문구의 일괄 정비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주식 양식 변경을 위한 준용 규정 마련
	보험수리적손익 계정과목 신설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실무해설 개정
202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의 별지서식(국가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개정
	'정부보관금 분류유형(국고과-1737 공문)'에 따라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상 정부보관금 정의 및 분류체계 개정
	'퇴직수당미지급금' 및 '퇴직수당비용' 계정과목 신설
	'예산편성지침'과 '국가회계편람' 간 설명 및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국가회계예규에 반영
임차개량자산 회계처리 적용 유예	

### 지자체회계기준 개정사항

개정연도	개정내용
회계 간 자산 이동	지자체 회계실체 사이에 자산이 이동한 경우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조항 신설
정책변경 회계처리	회계정책 변경과 누적이익 표기 방식을 국가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기타 용어 정비	자산의 정의 명확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용어 변경(관리전환 → 회계 간의 재산이관 또는 물품의 소관 전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일반수익'을 '수익'으로 변경

## 나 차입원가 IPSAS 의견 제출 논의

(김봉환) IPSAS에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원석) 국제적으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선택하게 하는 흐름하에서 우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양영철) 세계적 흐름이 차입원가 자본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방향은 비용의 기간 간 배분 측면에서 동의하나, 지자체의 실정과 여건상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규) 차입원가를 자본화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호주와 같이 IFRS를 적용하지만 GFS를 중시하는 나라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하더라도 GFS에서는 비용화하는 경우 차이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경호) IPSAS는 정부회계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부회계에서는 가치 평가가 큰 의미가 없으며, 실무적 편의를 고려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해외 타 회계처리기준을 우리 정부회계에 적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회계처리와 효과적이지 않은 회계처리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IPSAS에서 차입원가 자본화가 선택 사항이 될 경우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의견 제출안에 추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소영) 국가회계기준에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의미가 있으며, 타 국가에서 차입원가 자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다 공공회계 포럼 운영 계획 및 MoU 체결 논의**

(김경호) 공공회계 포럼이 국가, 지자체, 다른 공공부문까지 아울러 연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봉환) 지방회계통계센터의 경우 '찾아가는 세미나' 등 현장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센터가 발생주의 정보를 부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통계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더 좋은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선국)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회계 포럼을 같이 개최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각 기관이 다루는 대상은 다르나 주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협력이 바람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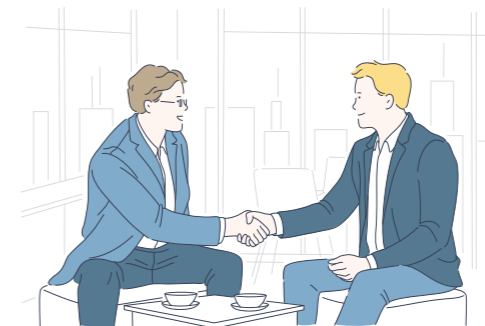
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회계기준에 차이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용어와 회계처리가 다른 부분은 함께 논의하여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국가회계에 비해 체계적으로 회계기준을 개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도움을 받아 업데이트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은경) 국회에서 예·결산 검토 시 국가회계 재무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야 파급력이 커지므로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요청드리며,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괴리가 너무 크며 이용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안옥진) 민간 기업과 비교하자면 국회는 기업의 주주의 역할에 해당하며, 주주가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최원석)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정부회계학회와 MoU의 당사자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창오) 한국정부회계학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MoU 체결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지방회계통계센터로부터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를 갖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한국정부회계학회 교수님들께서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2021년 제1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월 8일에 센터의 2021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평가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2021년 제1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정책사업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센터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위원장인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의 주재로 박성환 교수(한밭대),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 지현미 교수(계명대),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박노옥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석하였다.

이에 센터는 2020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을 202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보고하였다. 2021년 주요 개선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사업결과 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시 향후 사업계획 심의결과 항목별 반영 및 그에 따른 근거 제시 도입
- 연구네트워크, 한국재정정보원, 지방공제회 등 유관 부처 간 MoU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및 연계 예정
- IPSASB ED(공개초안)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한 센터 내 홈페이지 공개
- 비영리 회계기준의 엄격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적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국가회계기준과 IPSASB 간 회계 제도 차이 분석과 관련 보고서 발간

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한 개선계획을 토대로 2021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차년도 연구기관 및 정책기여도 평가 시 객관적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해외공동연구: 「녹색공공조달 온실가스 감축효과」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과의 공동연구로 「녹색공공조달 온실가스 감축효과(2020. 12. 23.~2021. 3. 31., 3개월)」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한 연구협력의 일환으로, 모과제인 「기후 변화와 공공재정관리의 상호 작용(The Interplay of Climate Change and Public Financial Management)」 중 한국의 사례조사 파트를 맡아 한국의 녹색공공조달 현황 및 공공재정관리 도구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가 연구내용 요약

한국의 녹색공공조달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에 의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위주로 이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라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녹색제품구매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매년 기관별로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공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공공조달에서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에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저탄소제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0년 7월 신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녹색공공조달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으며, 향후 저탄소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잠재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한국의 녹색공공조달 제도에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제한적인 녹색제품의 범위로 인해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아 향후 녹색제품군의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구매담당자의 녹색구매교육 부족, 녹색제품의 부정적인 선입견 등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답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과 이행 사이의 이행격차(implementation gap)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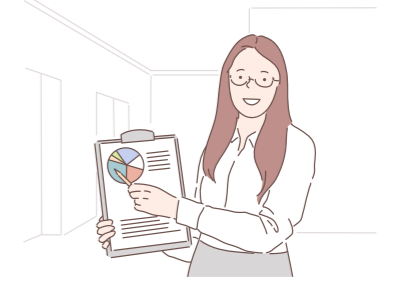
또한 공공조달의 도구로써 ① 수명주기접근법 ② 중앙집권식 조달방식 ③ 전자조달시스템이 앞서 말한 녹색공공조달의 이행격차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③ 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재정시스템 및 녹색구매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녹색조달 제도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 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참여를 통해 공공조달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조달 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민간시장을 선도하는 간접효과도 있기 때문에 공공조달에서 녹색화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 전반에 미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탄소중립과 그린뉴딜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에 대하여 녹색제품구매 및 녹색공공조달제도가 중요한 도구로써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ESG 관련 비재무적 정보의 제공 이슈에 발맞추어, 정부 측면에서도 녹색공공조달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그린회계기준과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향후 녹색조달제도의 적극적 이행 및 성과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이 탄소중립선언 등 국가정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의료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의료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에 대해 정형록(경희대 교수), 정광화(강원대 교수), 노희천(숭실대 교수), 기은선(강원대 교수), 김미옥(배화여대 교수), 허성준(경희대 교수)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센터는 이 과제의 최종보고세미나를 지난 1월 6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정형록 교수의 연구보고와 변영선 상무(삼일회계법인)와 최호운 회계사(회계법인 더함)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공익법인 간 회계기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연구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주요 현황 및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단계적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표 주요 내용 요약

-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은 회계기준 적용방식, 구분회계의 복잡성, 수입원천 차이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의료기관 재무정보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변환하면 임의성이 개입될 가능성, 재무정보 이용자 범위의 불명확성, 의료기관의 특수성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을 장·단기 관점에서 제시
  -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의료기관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연계
  -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모든 공익법인의 기본 회계기준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법인회계기준을 하위 회계기준으로 설정



위탁과제 최종보고(1월 6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

토론 주요 내용 요약

■ 변영선(삼일회계법인 상무)

- 의료기관의 재무정보는 보험료 결정 등에 사용되는데 이런 측면을 볼때 공익법인회계 기준의 제정목적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됨. 회계기준을 통합하는 경우 오히려 정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또한 의료기관, 학교, 모금단체 등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비교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동종업종 간 비교로 충분할 것

■ 최호윤(회계법인 더함 회계사)

- 의료기관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비영리법인과 성격이 다르며 의료기관과 의료법인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재무정보이용자는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정도로 한정되며, 공익법인의 재무정보 이용자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인 모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안에서 의료기관 운영 내역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 필요

■ 김완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현실적인 한계점,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등을 상세히 언급해주면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위탁연구용역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위탁과제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연구를 권선국(경북대 교수), 장지영(경북대 교수)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세미나가 1월 26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권선국 교수의 보고와 변영선 상무(삼일회계법인)와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구는 공익법인 간 회계기준의 정합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연구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주요 현황과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해 두 기준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 주요 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여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떨어짐
- 단기적으로 두 기준 간 차이를 줄이는 방안 제시(재무제표 명칭 통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도입, 주식기재사항 도입 등)
- 장기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정
- 또한 추후 설립유형별(국공립, 사립)·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 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공립·사립을 망라한 학교에 적용되는 단일 학교회계기준 제정 연구가 필요함

토론 주요 내용 요약

■ 변영선(삼일회계법인 상무)

- 현행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단식부기를 인정하고 현금주의회계가 혼재되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이 저하되어 정비가 필요함
- 또한 대학뿐만 아니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는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등학교 회계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부회계감사대상에 학교법인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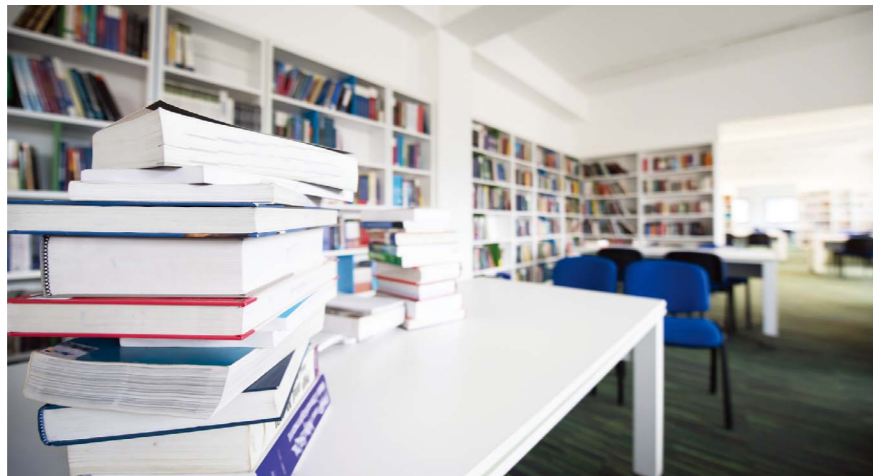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모두 국세청 결산공시를 수행해야 하나, 상당수의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공시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공시 의무 및 공시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시급함
- 사학기관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합성을 다루기 이전에, 사학기관의 회계기준, 외부회계감사, 결산공시라는 회계투명성을 다루는 핵심제도에 대한 보완과 관리가 필요함

■ 최호윤(회계법인 더함 회계사)

- 학교회계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예산통제 관점의 현금주의 수지결산으로 할지, 활동성과보고 관점의 운영성과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필요. 예산통제 중심의 경우 특례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별개 체제로 가야하지만, 활동성과보고 관점이라면 조화가 가능
- 현금주의, 발생주의 두 가지 관점은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면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보고서 모두 사용하는 병행관점으로 개선 필요

■ 김완희(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쟁점사항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추가되거나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면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개선방안 연구」 위탁연구과제 발간 예정



**제 목**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0. 7. ~ 2021. 1.  
**연구진** 김완희(가천대 교수), 최원석(시립대 교수), 노희천(송실대 교수), 이정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선임연구원)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비영리)회계의 교육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적합성 관련 분석을 진행하고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정부 및 비영리회계를 강의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현재 수행되는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회계의 핵심적인 사항이 체계적으로 강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강의현장에서는 개설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정부회계와 비영리회계가 혼재되고 있었고, 관리회계 분야와 비영리회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이를 바탕으로 정부회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강의 범위에 참고할 수 있는 교재 목차를 제시함
- 그럼에도 정부 및 비영리 회계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 진행



**제 목**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연구기간** 2020. 12. ~ 2021. 6.  
**연구진** 김완희(가천대 교수), 이정미(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선임연구원), 양은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연구원), 김종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방향

- 최근 들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수준과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과 투자에서 ESG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경보고서 공시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세계적으로 무역,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ESG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세계적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필수적이나, 현재 공공부문의 표준화된 공시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공공부문을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공공부문의 환경회계 구축 및 환경보고서 공시기준 마련의 단계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세미나

- VBA 2020 Korea,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통합
- 비재무보고 동향과 대응 방안 심포지엄





# VBA 2020 Korea,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통합

이번 세미나에 소개되는 2건의 심포지엄은 외부기관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센터에서 연구원들이 참가하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일시·장소** 2020. 10. 28.(화) 16:00~18:00, SOVAC 홈페이지 및 유튜브  
**주 제** ESG 측정표준화의 기업노력공유 및 재무성과와 ESG 성과의 통합방안  
**주관(후원)** VBA, SK(기획재정부, 주한독일대사관)

## I 환영사 및 축사<sup>1)</sup> 요약

### • 기업의 측면

- 기후변화 및 팬데믹은 예측하기 힘든 경영환경을 가져왔고, 근본적인 기업의 역할과 새로운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짐
-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했던 기업경영에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ESG를 반영한 지속가능 경영이 필요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새로운 규칙이 되고 있음
-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업 연합 더 나아가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ESG의 표준화 측정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노력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논의를 확산하기를 희망

### • 정부의 측면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정부투자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의 대규모 투자(이 중에서 지역에 75조원, 그린뉴딜에 20조원)를 조성할 계획임
- 정부의 재정투자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므로, 민간투자로 확산되어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계기로 그린시대로의 전환, 포용과 공존의 시대,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통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

### • 유럽의 새로운 로드맵(2050년까지)

- 배출권 규제만으로는 해결 못함
- 새로운 기회 및 새로운 고용 등 순환경제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함
- ESG 측정의 지침과 지표 등을 만들어 표준화된 적용이 필요하고, ESG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결합하는 과정 역시 요구되며, 기업 스스로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 II 기초연설: 글로벌 ESG 측정표준화 추진동향

### (1) Tom Beagent(영국 PwC Total Impact Measurement & Management 총괄)

### • 기업의 역할이 변화해야만 하는 이유

- 다보스 포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새 모델(50년 만에 Davos Manifesto 선언)
- 과거: 기업의 의사결정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지 않았고, GDP 역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해 왔음
- 현재: 기업은 사회와 환경을 희생하면서 이윤을 창출  
 예) 자연자본보다 GDP성장에만 치중했고, 기후변화와 사회환경에 대한 비용부담을 위해 스웨덴과 스위스에서는 탄소가격을 매기고 있음
- 미래: 번영하는 사회와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체제로의 변화 필요  
 수익창출을 위한 재무성과를 넘어 기업의 활동이 사회, 환경, 경제에 미치는 결과를 측정하는 체제로 변화

1) 환영사 및 축사는 환영사: 최태원(SK 회장), 축사(1):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축사(2): H.E. Maria CASTILLO FERNANDEZ(주한 EU 대사), 축사(3): Peter Winkler(주한 독일 부대사), 축사(4): 평화강(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비서장), 축사(5): Snada Ojiambo(UN Global Compact 사무총장)로 진행됨



• ESG 지표는 2가지 측면에서 부족

① 기업운영측면에 치중

- 환경영향요소는 기업의 공급망이나 제품사용단계에서 발생
- 이의 해소를 위해 '제품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나 제품의 Value Chain에 대해 평가하는 모델링을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함

② 'ESG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음

-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결과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  
예) 용수 사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물 접근권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Total Impact Measurement & Management 개발

- 기업이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 이는 사회, 환경, 경제, 세금 4개 분야에서 전 Value Chain에 대한 기업영향을 평가
- Total은 기업에 유리한 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각 제공 의미
- Impact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의미
- Measurement는 영향의 화폐화를 의미
- Management는 외부공시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정보제공의 의미

• IBC(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측정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 사회/환경 영향에 대한 수치를 화폐화로 변환하는 측정지표 포함

(2) Mark Gough(Capital Coalition CEO)

• Capital Coalition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글로벌 협의체

- 전세계 VBA를 포함해 다양한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
- 결성의 이유
  - : 3대(기후, 생태 다양성, 불평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과제
  - : 자본을 이용하여 자연, 사람, 경제,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
  - : 시스템전환을 위해서는 기업, 정부, 금융기관, 시민사회, NGO, 학계, 과학계 등 전 분야의 참여 필요
  - : 2030년 말까지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함

• 이를 위해 4개 분야에 집중

- ① 측정방법의 변화: 회계규칙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을 변경하는 것
  - <The Transparent Project> 사업을 통해 EU, VBA, WBCSD가 협의하고 있음
  - 즉 자연, 사회, 인간에 대해 개발된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변경한다는 의미
- ② 소통의 변화
  - 지역단위의 접근이 필요
  - 지역플랫폼(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까지 연결된 플랫폼) 마련
  - 지역별로 사람들이 중시하는 현안을 파악하여 소통과 합의된 정의에 따라 변화
  - 4개의 자본(자연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생산자본)에 대한 소통
- ③ 규칙과 인센티브 기제의 변화방법 모색
- ④ 시스템의 변화
  - 자연, 자본, 인적, 생산 관련 자본의 활용
  - 자본접근의 세 가지 변화
    - : 지속적인 영향력 측정
    - : 현재 측정방법(수치) 이상의 가치(Value) 측정 필요
    - : 시스템적인 접근과 종합적 경영 의사결정

• 기업의 의사결정(경영상 의사결정)을 시스템에 의해서 변화되도록 노력

- Olam(올람): 지속가능성을 넘어 재무부서에 ESG를 적용하여 변화 주도

- BNP Paribas Asset Management(BNP 파리바자산운용)  
: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접근법 적용
- 뉴질랜드 정부: 생활수준 프레임워크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작업 진행 중
- Kering(케링): 환경손익계정 신설
- ASN 은행: 생물다양성 회계 재무플랫폼 협업 주체

• 시스템 차원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회계 원칙의 뉴노멀화

- 금융기관, 기업,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자본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변화 중
- 단일 기업이나 단독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협업프로젝트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함

III 주제발표

(1) EU 그린딜을 통한 산업체계 전환노력: Green Accounting Project  
Thomas Verheye(EU 환경총국 수석자문관)

• 그린딜 산업 시스템의 현황

- 환경리스크(환경분야 전체)의 심화는 경제 및 사회에 타격
- 자연자본의 사용, 보호, 회복을 통합적, 포괄적, 미래지향적으로 다뤄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적·미래지향적 고려도 부족하며, 심지어 시장에 전달되지도 못함
- 전체 제품에서 친환경 제품 점유율은 2~3%에 불과하며, 경제 내에 보급되는 제품의 약 98%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문결과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JP모건 설문조사, 2018)

• 자연자본에 대한 회계기준 수립노력이 중요한 시점

-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그림이 필요함(공기, 물, 토지, 생물다양성 등 모든 환경요소)
- EU 집행위원회: 자연자본 경영회계부문에서 측정·평가의 표준화된 기준을 개발하고자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추진
- Natural Capital Protocol, Capitals Coalition, WBCSD 등 기관과 협력

• Green Accounting 관련하여 이미 ESG 관련 보고와 공시를 통해 기업경영에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여러 기업이 존재

- Kering은 PwC의 True Cost를 기반으로 Puma가 개발한 체계 적용  
: BASF, Novartis 등 VBA 멤버사들도 비슷한 체계 적용

• 의류산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 해당 회계연도 중 기업의 환경 의존성과 환경리스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침
- 자연자본의 유형별로 공급망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화폐로 환산하면 그 비중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서, 이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강화수단 마련 가능  
: 보고와 공시를 간단하고 스마트하게 변환하면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반영 가능  
: 유형별 분류를 비중으로 나타내보면, 공급망 전체에서 환경영향 중 기후변화 영향이 35%로 가장 크며, 나머지 65%도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 이는 각 나라에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각 기업이 어느 정도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와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 평가가 시장에 반영되는 선순환 과정을 이끌 수 있음

• Transparent Project

- EU집행위원회에서 재정지원
- 기업과 생물다양성 등 환경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플랫폼이자 주요 기관들과 함께 자연자본 회계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하는 프로젝트
- 어디서든 적용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표준기준 마련 필요
- 자연자본에 대한 회계기준 원칙 수립 예정('20년: 1차, '21년: 2차, '22년: 3차)

(2) ESG 측정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Value Balancing Alliance(VBA)  
Christian Heller(VBA CEO, BASF)

• VBA는 2019년에 설립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 1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4개의 주요 회계법인의 프로보노(Pro Bono) 자문,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정책자문을 하고 있으며, EU는 GA(Green Accounting) 원칙개발을 의뢰

- VBA는 현재 이런 변화에 직면하여, 장기적인 가치창출 및 의사결정의 지속성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 : 주주가치의 극대화(현재) → 사회적 가치 최적화(미래)
  - : 산업기반경제(현재) → 무형기반 경제(미래)
  - : 수익기준(현재) → 사회적 책임(미래)

• EU 분류체계는 친환경 경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에 노력

- 보고 및 공시 표준화 기관들이 글로벌 비재무보고 표준의 일원화 논의 시작
- IFRS 산하에 설립되는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표준을 담당할 예정
- 비재무데이터의 창출, 수집, 응용에 대한 방법론 개발 및 테스트의 시도는 미진
- 이를 위해 VBA는 비교가능한 지속성을 위해 ESG, 자연, 사회, 인적자본을 경영회계에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VBA는 기업경영을 반영하는 두 축인 사회적 가치와 생태계에 대한 기업영향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기반 회계방법론 개발에 노력

- Value Chain에 따라 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
  - : CO<sub>2</sub>의 진정한 값이 얼마인지를 산정, 임금·세금 제공의 효익 산정
- 이런 측정으로 기업운영의 사회적 라이선스를 받았는지를 평가
- ESG가 기업의 재무적인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하여 기업의 가치평가
- 이는 기존 재무회계시스템의 확장적 개념으로, 친환경적인 공정에 대한 투자가 자산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게 됨
- EU는 VBA에 GA(그린회계)를 공식 의뢰했고, 방법론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예정

• VBA는 참여기업에 3가지 사항에 대해 약속

- ① 네트워크 공유
- ② 방법론 개발팀 일원으로 미래회계표준 마련
- ③ 미래회계 표준의 통찰력 제공과 경험 공유로 지속가능 주도기업으로 성장

(3) ESG 측정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Value Balancing Alliance(VBA)  
George Serafeim(하버드대 교수)

- 변화이론(영향력 투자 및 영향력 관리 프로젝트)\_Impact Transparency Management
- 현재는 자연, 사회, 인적자본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시스템이지만 미래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고 고려하는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현대경제	변화이론
생산적	사회적
환경오염, 불평등, 소외	환경, 불평등, 소외의 영향력 측정
실물, 금융 측면만 고려한 회계시스템	실물, 금융을 넘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
자연, 사회, 인적 자본에 대한 고려 간과	최근 연구: 전 세계 56개 조직들이 영향을 화폐화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증가
→기업들의 자원배분 오류 발생	→기업들의 자원배분 오류 감소
→지속불가능, 비포용적 경제체제	→지속가능, 포용적 경제체제

• 하버드 IWA(Impact Weighted Accounts Initiative)는 환경, 고용, 제품의 3가지 분야에 대해 연구

- 기업운영에서 환경영향, 급여수준, 기회제공, 보건·웰빙이 창출하는 영향력 측정
- 자동차, 금융, 제약이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측정
- 최근 하버드대는 데이터와 방법론 공개
  - : 하버드대는 총 13,000 회계연도의 기업운영 환경영향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
  - : 또한 고용영향 측정 방법론 논문 발표(이 방법론을 애플, 머크, 코스트코, 인텔에 적용했을 때 기업들의 인적자원 영향력이 재무제표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

• 이전에는 재무회계시스템이 자본시장의 추동력이었다면, 이후에는 환경적 요소가 반영된 영향력 측정 회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영향력이 반영된 자본시장 구축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임

- 영향력의 화폐화 → 회계시스템의 변화 → 자본시장의 변화
- VBA의 역할: R&D, 설비투자, 고용, 고객만족 측면에서 가치기반의 의사결정의 사례를 만들고 이를 투자자 및 정부 등과 공유하는 노력 필요
- 가치영향력을 반영하는 경제로의 전환 필요(긍정적 영향에는 인센티브 부여, 부정적 영향에는 과세)

IV 종합토론

좌장 장용석 연세대 교수

- ESG를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
- 비재무적·재무적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ESG 회계의 측정, 표준화, 화폐화 등에 대해 논의

토론자 1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ESG 정보가 투자자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수요를 확대시킬 전망
  - 양적: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음
  - 질적: 충실화된 정보(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정보 요구)
- ESG의 표준화는 무엇을 표준화하는 것인가?
  - 보고내용의 표준화: 보고 Topic(기후변화, 수질오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우선순위와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
  - 보고단위의 표준화: 연결기준/개별기업기준, 지분법/연결법 등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표준화의 논의가 필요함
- ESG의 표준화가 IFRS만큼 정량화된 국제적 표준화로 가기는 어려울 전망
  - 표준화 가능: 투자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가능
  - 표준화 불가능: 각국의 개별적 입법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불가능

토론자 2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

- ESG투자시장 확대: 6.5조달러(2006)→80조달러(2019)→이후 ESG투자가 대세, PwC 추정
- 현재의 ESG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함

현재의 ESG 생태계	(희망) ESG 정보생태계
복잡	단순
조직 다양(70여 개국에 400여 개 조직 존재) 기준 간 내용 차이 대상자 다양 자발적 공시 품질 담보되지 못함	표준화 일원화 비교가능성

- 비교가능한 ESG 정보가 필요하며, IFRS와 같은 표준화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
- IFRS가 1973년에 설립되어 140여 개국이 글로벌 표준화하는 데 약 40년 소요
- ESG 관련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의 통일(통합) 가능한가?
  - : 매우 규모가 큰 작업이고,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임
  - CRD(2014): ESG 정보공시의 표준화 논의(8개 조직 참여) 시작
  - 기준차이 조정 가능한가?
    - : '물질로 기준차이 표준화 가능한가?'를 TCFD로 테스트→가능하다는 결론
  - VBA(2019): ESG의 영향력 측정, 표준화, 화폐화를 논의
  - IFAC(국제회계연맹, 2020): IFRS에 ESG기준 적용 지지선언
  - VBA, 빅4 회계법인, 대표적 5개 평가기구: 글로벌 표준화 노력선언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열정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표준화 및 통합의 장애요소
    - : 400여 개 기준 간 차이에 대한 통합
    - : 많은 조직들의 이해관계 충돌
    - : 개념, 용어, 기준 등 통일과정에서 시간 소요

토론자 3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투자자 관점에서 ESG는 왜 필요한가?
  -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금융적 요소만을 파악하였으나, 2004년부터 ESG(예: 우발채무 등)를 투자(특히 장기투자자)의 지표로 삼기 시작함
  - 투자는 정확한 측정에서 출발하며, 표준화된 방법론에 의해서 평가될 때 분야별 비교가 가능
  - 예) '자동차부문에서 현대차/기아차 선택 시 무엇을 볼 것인가?'의 출발점은 ESG가 될 것임



ESG 중에서 E, S, G 각각의 통합가능성

- E: 환경 관련해서 통합이 가능하며 용이함: True Cost(700여 개 환경물질 화폐화)
- S: 사회적 통합이 상대적으로 어려움(EU와 타국 간 동물복지 수준 격차 등)
- G: 투자자/주주 관점, 소유경영 분리(영미)/재벌시스템(한국)으로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여 이 부분의 영향력과 효과 추정이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임

토론자 4 강동수 SK SV위원회 부사장

• 이해관계자 중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필요

- 개인과 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기업이 가치를 측정하는 혁신적 공시의 투명공개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경제 내 선순환구조 마련
- EU 사례: 기업 GA(Green Accounting) 공시 및 보고 → 소비자(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 →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와야만 변화와 혁신이 가능

• 표준화 및 화폐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임

- ESG에 기반하지 않고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실함 존재
- IFRS가 표준화에 40년 걸렸지만 IT 기술 등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지금이 시작임



# 비재무보고 동향과 대응 방안 심포지엄

일시·장소 2020. 12. 14.(월) 15:00~18:00, 온라인 세미나  
 주 제 비재무보고, 기업생존을 좌우한다  
 주 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회계기준원

## I 개회사 및 축사<sup>1)</sup> 요약

• 비재무보고의 국제적 동향(영국)

-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개최 예정
  - 197개국 대표들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 계획
- 2025년까지 TCFD 공시 의무화 계획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구축 및 IFRS재단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SSB) 출범 지지의사 표명

## II 주제발표

### (1) 비재무보고 현황 및 활용(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

• 글로벌 ESG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비재무정보 요구 증가

- 2018년 기준 전 세계 ESG 관련 투자 규모는 약 31조달러(2016년 대비 34.4% 증가), 2030년까지 100조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

1) 개회사 및 축사는 개회사: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축사(1): 주인기 국제회계사회연맹 회장, 축사(2): Benjamin Matthews 주한영국대사관 경제과 과장이 진행함



- ESG 채권형 펀드 출시 또한 증가함에 따라 비상장사에 대한 ESG 보고 요구 확대

**• 기후 변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 확대**

- 각국에서 환경정보 공개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되면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 환경 관련 규제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

**•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지속가능 부문에 대한 기업관여(Engagement) 증가**

→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기후변화' 지목

- BlackRock: 2020년부터 화석연료 매출이 25%를 넘는 기업들은 투자대상에서 배제 결정  
 - JP Morgan: 산림 파괴 및 북극 개발 등에 연루된 기업에 투자 금지  
 - APG: 202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 내 탄소배출 25% 감축 등 구체적 목표 제시 요구

**•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공약 중 기후변화 대응정책 강조**

-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친환경 정책 제시  
 -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정책은 전 세계에서 ESG가 투자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 해외 비재무 공시 현황**

- 미국 S&P500 지수 편입 기업 중 약 85%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보고를 요구하는 주주제안 증가 추세  
 - 각국 정부(EU, UK, 중국, 일본 등)에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  
 - 각국 증권거래소에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정, 일부 거래소는 상장사 대상으로 ESG 공시를 상장기준으로 의무화

**• 국내 비재무 공시 현황**

- 국내 상장법인의 경우 지속가능보고서 및 통합보고서 등의 형태로 ESG 정보 제공  
 -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시 GRI, TCFD, SASB 등 다양한 보고 표준을 복수로 활용하여 기업공시 부담 가중  
 - 기업의 자율적 공시로 인해 정보의 범위 및 품질 상이  
 - ESG 공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무산

**• 국내·외 비재무 공시 전망**

-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비재무정보 공개 기준 표준화 필요성 제기  
 - KRX: 자산총액 2조원 기업 대상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0년 E·S 공시 가이드스 마련 및 공개 예정  
 - IFRS 재단: 비재무보고 표준 제정을 위한 검토의견서 공개(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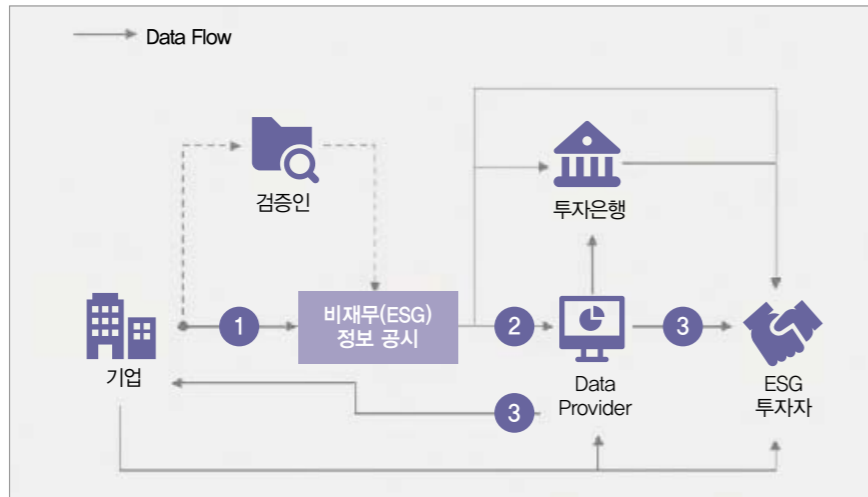
**(2) 기업의 비재무보고 동향 및 공시 이슈(김정남 삼정KPMG 파트너)**

**• 국내외 비재무보고 동향**

- 전 세계적으로 비재무보고는 보고서 형태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재무보고 요구는 정부기관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은 효율적 정보공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비재무보고 방향성은 기업 경영활동의 환경·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의 통합적 보고를 요구함(예: IIRC, TCFD)

• **비재무보고 Value Chain에서의 주요 이슈**

- ① 다수의 공시기준으로 인해 공시품질 하락 및 기업공시 부담 가중
- ② 공시 정보의 일관성 하락으로 인해 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
- ③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도 ESG 평가지표 상이→ 신뢰성 하락



• **주요 참여 주체별 제언사항**

- 정책당국: 규제 강도와 공시 요구 범위를 고려한 방향성 제시
- 기업: 비재무보고 역량과 체계 재정비(핵심 이해관계자 선정, 공시 채널 다양화, 성과 연계 강화 등)
- 회계업계: 비재무공시·인증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대 필요

(3) **IFRS재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협의문서 소개(Erkki Liikanen IFRS재단 이사회의장)**

• IFRS재단은 지속가능경영보고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에 대응하고 재단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2020년 9월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

- 외부 의견 조회 마감일은 2020년 12월 31일

• **주요 제안사항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SSB) 설립 제안**

- IFRS재단 내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함께 운영될 계획
- 공공당국, 전 세계 규제기관 및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요구
- 기후변화 관련 보고기준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

(4) **비재무보고 국제기준의 단일화 동향(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2팀장)**

• IFRS재단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협의문서' 상세 설명  
 • 지속가능경영보고에 있어 IFRS재단의 역할 논의

- IFRS재단은 1) 기준 제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2)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수행 3) 각국 정부 및 기준 제정기구들과의 공식적 협력 관계 등 기준 제정에 도움이 될 역량 보유
- IFRS재단의 3가지 옵션 1) 현상유지 2) 기존 기준들의 활용 추진 3) SSB 창설 및 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중 3)을 제안

•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창설 구상**

- 재단 산하 위원회를 창설하여 재무보고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보고 개념체계 개발
- IASB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기준과 재무보고기준의 연계성 제고

• **SSB 창설의 선행조건**

- 각국 정부, 규제기관 및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범국가적 지원
- 별도의 예산 확보
- 전세계적 일관성을 위해 국가별 비재무정보 공시제도와의 조율
- 이사회, SSB위원과 스태프들의 기술적 전문성 확보
- 재무보고와의 효율적인 시너지 달성을 위한 구조 및 문화 형성
- IFRS재단의 자원과 현재의 임무들이 방해받지 않아야 함

• **기준제정 전문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별 정책과의 조율 강조**

- 최근 SASB, GRI, CDSB, CDP가 비재무보고기준의 일관성 및 포괄적 보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제안서 발표(2020. 7.)
- 기존 기준제정 전문기구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요구 및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대한 의견 요청

- 현재 IPSF(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등 EU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별 정책과의 조율 요구

• 최우선 과제로서 '기후위험' 제시

- 기후위험이 각국의 기후 관련 규제들로 인해 투자자 및 규제당국에 매우 중요한 재무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음
- 기후 관련 정보에 초점을 맞추되, 점차 범위를 확장할 계획임

• 감사 및 인증 방안 제안

- 비재무공시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추후 IAASB(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및 감사 전문가들과의 협력 시사

III 종합토론

좌장 박수근 서울대 교수/IFRS재단 이사

토론자 1 강동수 부사장(SK SUPEX추구협의회 SV추진팀)

- ESG 정보 공시의 표준화와 함께 ESG 정보의 화폐화가 수반되어야 함
  - 1) 기업의 ESG 경영 의사결정 및 목표관리 2)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성과 측정 및 보상 3)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ESG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완화에 효과적
-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
- SK에서는 ESG 화폐화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중 현재 정보의 신뢰성 및 명료성에 한계점 존재하지만 보완할 예정

(좌장) “측정이 없으면 관리가 없다”는 말에 담겨 있듯이 목표관리를 위한 측정기준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토론자 2 유정민(광고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 비재무정보 공시기준의 표준화에 대하여 일부는 공감하지만,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한 기준경직성, 기업의 의무공시 부담, 기존의 기준 제정기구와의 관계 등 문제점 완화방안 필요
- 향후 통일된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제3자의 인증이 요구됨에 따라 정보의 인증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제정 및 인증방안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 필요
- 현재 회계사 및 회계전문가들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전문성 부재, 회계사들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노력 및 대응 필요

(좌장) 정보의 신뢰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및 감사방안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인증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들의 기여가 요구됨

토론자 3 김동양(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확대는 고무적이지만, 보고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저조. 다수의 투자자들은 핵심지표 준수현황표 위주로 활용하므로 15개의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 및 보완 필요
- E·S에 대한 의무공시도 병행한다면 투자자들의 ESG 정보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
- 다만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비용 부담 및 정보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시원칙을 제공하고 단계적인 의무공시를 시행하여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토론자 4 이동섭(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 직무대리)

- 국민연금은 독자적인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활용 중이며, 2021년 ESG 성과체계 개편 예정
- 현재 E·S에 대한 정보입수율은 50% 정도로, G에 비해 E·S에 대한 정보 부족
  -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하락
- 투자자의 입장에서 ESG 정보공개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점 제기.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좌장)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가 선순환적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공단이 ESG 평가체계 구축 및 경제적가치와의 관계 실증에 도움을 주길 기대함

토론자 5 한중수(이화여대 교수)

- 국내 지속가능보고서의 문제점:

- ①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보고서 디자인에 초점)
- ② 긍정적 정보만을 강조(긍정적 정보가 부정적 정보의 2배 수준)
- ③ ESG 성과 분석 및 대응방안 부재, 단기 및 중장기 목표 혼재
- ④ 비일관적인 형식으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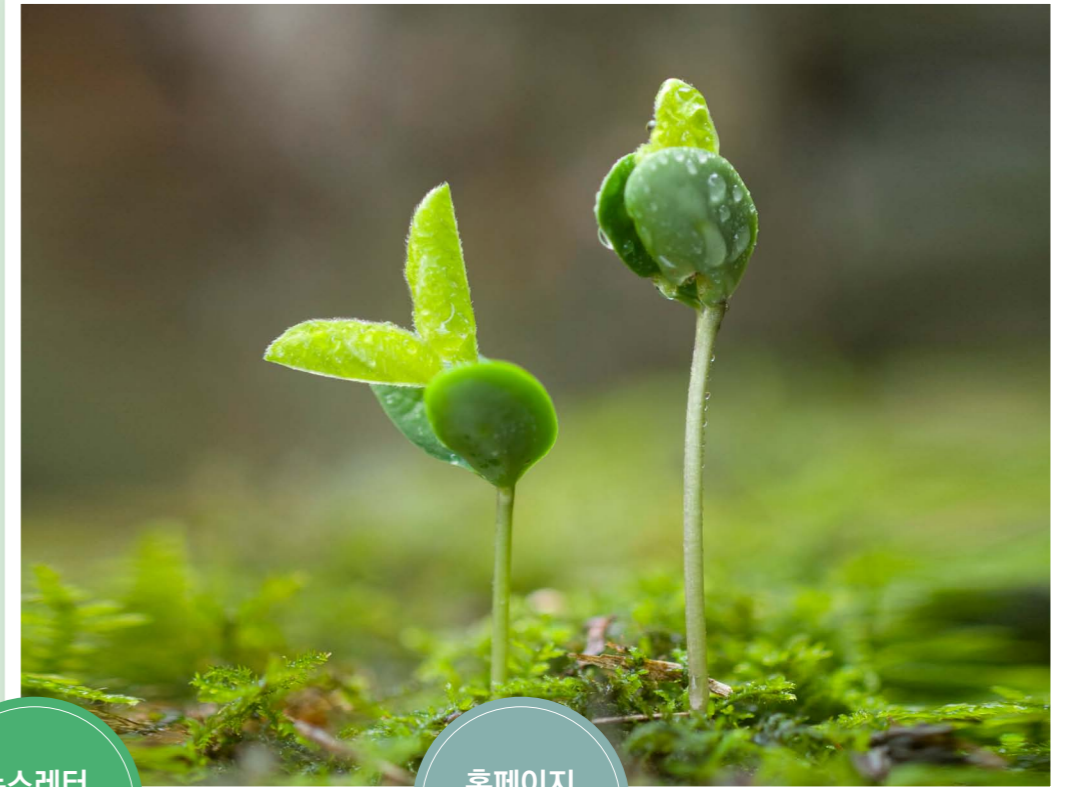
- SSB 설립에 대한 제언사항:

- ① 별개의 보고서 발간으로 인한 재무정보와의 단절 우려
- ② 기존 기준제정기구와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현행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
- ③ 기후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ESG 전반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함
- ④ 감사 및 인증을 고려한 기준제정 필요(측정가능한 지표 개발)

토론자 6 김선문(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팀장)

- 후발기업 및 중소기업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배려 필요
- 현재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중
- 향후 ESG 공시에 관한 범정부적인 지원 및 예산마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좌장) 현실적으로 비재무공시 역량이 낮은 후발기업 및 중소기업도 공급사슬(Supply Chain)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및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됨. 향후 비재무보고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뉴스레터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 News Letter는 분기발간물로 홈페이지 '발간자료/정기간행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발간물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센터소개>뉴스레터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뉴스레터 문의사항은 센터 대표전화(Tel. 044-414-22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i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봄 그리고 News Letter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